

스포츠3.0위원회 주최 세미나

대한민국 스포츠, 길을 묻다

- ❖ 일 시 : 2014. 2. 27.(목) 15:00~18:00
- ❖ 장 소 : 그랜드힐튼서울 그랜드볼룸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3.0위원회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 스포츠 길들이다

2014.2.27 (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정책국
체육정책과

대한민국 스포츠, 길을 묻다

- ❖ 일 시 : 2014. 2. 27.(목) 15:00~18:00
- ❖ 장 소 : 그랜드힐튼서울 그랜드볼룸
-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3.0위원회

진행순서

순서	내용	
1부 (15:00~15:30) (그랜드볼룸)	개회	사회자
	개회사	김양종/ 스포츠3.0위원회 위원장
	기조 강연 - 대한민국 스포츠, 길을 묻다	김 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기념 촬영	
휴식 (15:30~15:50)		
2부 개별토론 (15:50~17:50) *질의응답 포함 (그랜드볼룸 A, B, C)	세션(1) 지방체육 활성화 방안	【발제자】 이창섭/ 충남대 체육교육과 교수 【토론자】 김선대/ 대구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김응삼/ 경상북도체육회 운영부장 문병용/ 강원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세션(2) 심판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방안	【발제자】 김상겸/ 동국대 · 서울 법대 교수 【토론자】 방 열/ 대한농구협회 회장 김건태/ 아시아배구연맹 심판위원 손석정/ 남서울대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신정희/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
	세션(3) 대학스포츠 지원 방안	【발제자】 강신욱/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집행위원장 【토론자】 임철순/ 전국대학교체육부(과)장협의회장 안정훈/ 한국대학육상경기연맹 전무이사 최재원/ 중앙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목 차

【기 념 사】	1
유 진 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개 회 사】	3
김 양 종 스포츠3.0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 “대한민국 스포츠, 길을 묻다”	5
김 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세션 1】 지방체육 활성화 방안	21
이 창 섭 충남대 체육교육과 교수	
【세션 2】 심판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방안	37
김 상 겸 동국대 · 서울 법대 교수	
【세션 3】 대학스포츠 지원 방안	63
강 신 욱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집행위원장	

◆ 기 념 사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입니다.

스포츠3.0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스포츠, 길을 묻다’ 세미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바로 지난주, 2014소치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올림픽과 대한민국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정의 눈빛도 있었고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제,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대한민국 스포츠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 스포츠가 스스로 혁신해야 할 부분이 드러났고, 여전한 1등 지상주의에서 보듯 우리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1.0은 일방향, 2.0은 양방향, 3.0은 맞춤형을 뜻합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3.0의 의미입니다. 그간의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은 국위선양 등을 목표로 1등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보다는, 국민과 체육인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행복해지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정책도, 국민의 수요와 동떨어져 있거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필요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입안에서부터 실현까지 전 과정에서 개방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듯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스포츠3.0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스포츠3.0위원회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바로 ‘대한민국 스포츠, 길을 묻다’입니다. 동양에서 ‘길’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인생살이에 비유되고, 해야 할 도리·방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살펴, 앞으로 어떤 방향의 길을 낼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옳은 방향을 향해 함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나아갈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앞으로의 길을 놓는 초석을 마련하길 기원합니다. 정부도 대한민국 스포츠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4. 2. 2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 개 회 사 ◆



안녕하십니까. 스포츠3.0위원회 위원장 김양종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행사의 연사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제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등 메가톤급 국제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가입니다. 특히 그동안 취약분야로 간주되어 왔던 동계스포츠도 “밴쿠버올림픽”에 이어 이번 “소치올림픽”에서도 선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스포츠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포츠가 아직도 선진국 반열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스포츠선진국으로서의 과학적 방법과 합리적 운영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스포츠는 아직도 소수 정예부대 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대학 스포츠는 특기생 동일계 진학이라는 틈에 걸려 고사상태에 빠져 있고, 청소년 건전육성과 국민보건복지의 기초과정인 학교체육은 주지주의 교육정책에 밀려 뒷전에 처져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스포츠, 길을 묻다”라는 명제 하에 지방체육 활성화 방안, 심판 공정성·전문성 확보 방안, 대학스포츠 활성화 방안 3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한국스포츠의 문제점들을 재점검 해보고, 스포츠선진국으로 나아갈 명실상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모쪼록 각 분야별 발표자와 지정토론자분들은 물론,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고견을 주시어, 오늘 이모임이 한국체육·스포츠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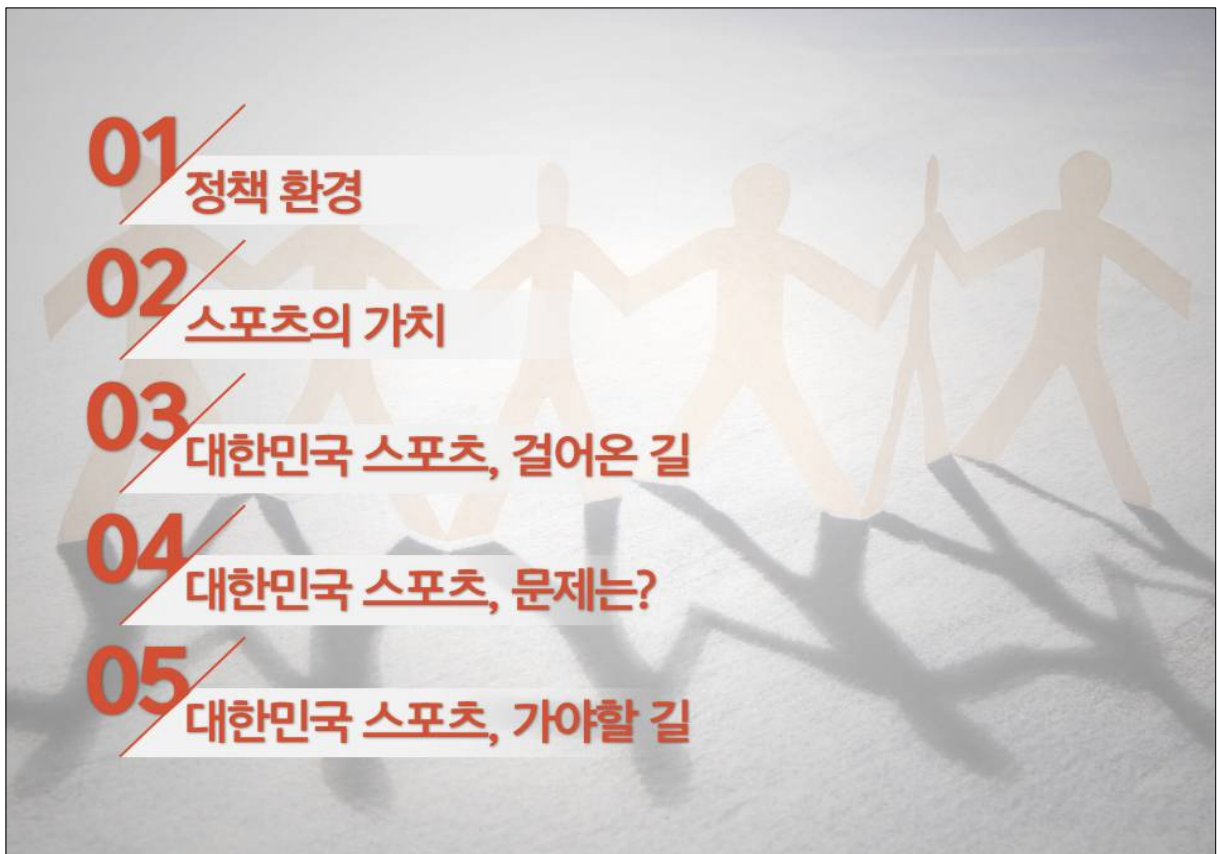
2014. 2. 27.

스포츠 3.0 위원회 위원장 김 양 종

제 1 부
기조 강연

대한민국 스포츠, 길을 묻다

김 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01 정책 환경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산업 ▶ 지식 ▶ 창조

창조경제
산업과 기술, 아이디어의 융합
→ 새로운 가치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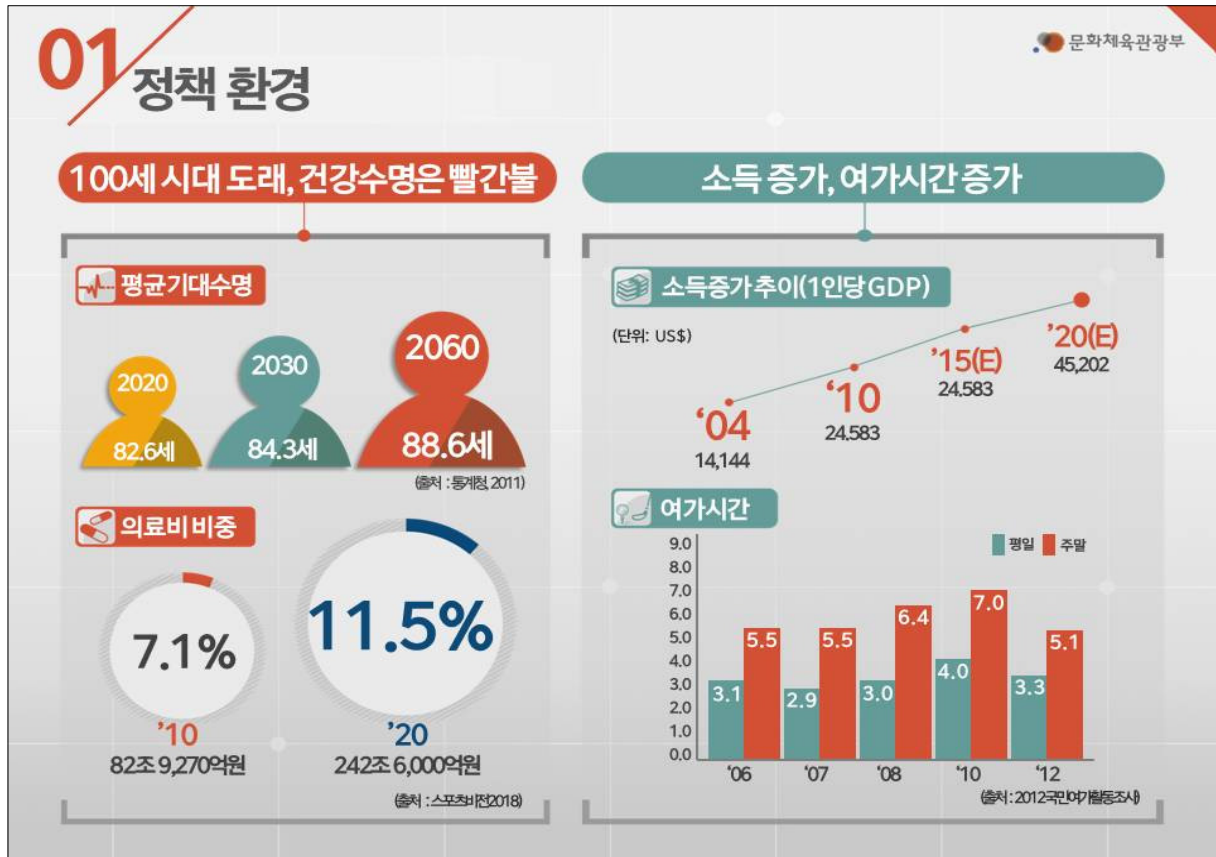

높은 소득, 낮은 행복지수

세계 최고의 압축 성장,
but 낮은 행복지수, 사회적 갈등

-60년간 1인당 GDP 358배 증가,
-OECD 행복지수는 27위


문화, 국가정책 키워드로 부각

문화융성



02 스포츠의 가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건강, 행복 증진에 기여

- 1인당 의료비,
연간 **46만원 절감**
(출처: 2008, 서울대)
-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운동을 통해
삶 자체의 변화 달성
- 스포츠로
건강수명 제고

개인과 가족
행복

사회적비용
절감

사회적 규범 학습, 사회통합에 기여

- 유년기 스포츠 활동을 통해
규칙, 협동심 등 체득
- 2002 월드컵,
96% — **92%**

국민간 친밀감 신뢰
(출처: 2002, 한국사자)

02 스포츠의 가치

문화체육관광부

소프트파워, 국가브랜드제고에 큰 역할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김연아 등 스타선수

창조경제시대 핵심콘텐츠

- 스포츠, 타산업과의 융합이 용이 ▶ 미디어, 게임, IT, 교육 등과의 연계 ▶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스포츠 산업	문화	서비스	기술	건설	미디어	타 영역
서비스, 상품, 시설	기부, 힐링, 교육, 건강 등 복합 이벤트 개최	관광, 숙박, 항공, 보험 등과의 융복합	스마트 기기, 가상현실, 기술 등의 접목	수영, 드라이빙 등 레저 스포츠 시설, 리조트 등	스포츠 콘텐츠 및 중계권 판매	...
Nike 'We Run Seoul'	나가는 스키투어	가상스포츠체험관	BMW 드라이빙센터	김연아 아이스쇼		
전세계 도시를 이어 달리는 대회로 기부, 러닝 문화 확산 기여	겨울 스포츠와 눈꽃축제, 온천 등 지역관광 융합으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	스크린 야구, 육상 등 스포츠 콘텐츠로 구성, 외국인 관광객 방문 급증	드라이빙 체험 및 교육 장소로 활용	피겨 이벤트 중계권 해외에 판매		



03 대한민국 스포츠, 걸어온 길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생활체육참여 확대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제고 '12년 43.3% → '13년 45.5%



장애인, 저소득층,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향유도 증가

- 장애인생활체육지도 수혜 | 84만명 (12만명 ↑)
-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 3.6만명 (160개소 ↑)

03 대한민국 스포츠, 걸어온 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적 위상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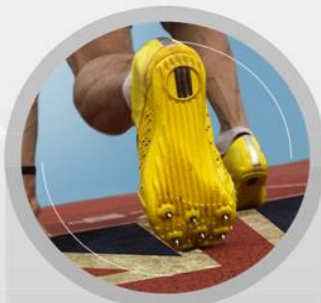
국제경기대회



세계 4대 국제대회 개최로
그랜드슬램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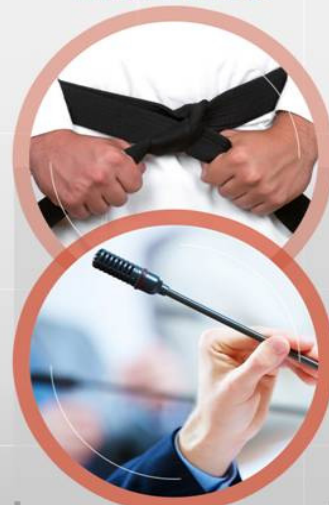
2017 FIFA U-20대회
생산유발 605.7억, 고용유발 3,937명
부가가치유발 289억,
(구.체육과학연구원, '13년)

경기력



런던올림픽
종합 5위

태권도 종목 유지,
WADA 이사국 진출등



03 대한민국 스포츠, 걸어온 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의 지속적 성장

- 2012년, 시장규모 57조 4천억원, 종사자 수 34만 2천명, 업체 수 84,246개
- 스포츠 산업의 꾸준한 성장으로 관련 업체 및 종사자 수 꾸준히 증가

국내 스포츠산업 규모



구분	2011년	2012년
시장규모 (삼억원)	36,513	57,479
종사자 (천명)	236	342
업체수 (개)	69,027	84,246
내수 (삼억원)	35,234	56,309
수출 (삼억원)	1,279	1,170

(출처: 2013 스포츠산업실태조사)

04

대한민국 스포츠, 문제는?



04 대한민국 스포츠,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공정성 훼손 사례 지속 발생

01

승부조작,
편파판정, 파벌 ...

02

선수
(성)폭력

03

체육계학교
입시비리

04

체육단체
사유화

스포츠 근간 훼손,
국민 신뢰 저해

04 대한민국 스포츠,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속가능한경기력유지 문제

선수 자원 부족과 역피라미드형 선수구조

국가대표선수	1,498명
국가대표후보선수	1,453명
청소년대표	1,003명
꿈나무선수	817명

비인기종목 대학스포츠, 실업팀 등 고사 위기

지방체육 개선 필요(행 재정적 어려움 호소, 지역선수 지원 미흡 등)

04 / 대한민국 스포츠,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육성 기반 미흡

-  기술, 인력, 정보, 제도적 기반 취약 **01**
-  기업 영세성
(4인 미만 사업체가 88% 차지) **02**
-  해외 스포츠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국내시장 70% 이상 점유) **03**
-  수출경쟁력 미흡으로 내수판매(96.5%)에 크게 의존,
최근 10년간 지속적 무역적자 **04**

05

대한민국 스포츠, 가야할 길



05 대한민국 스포츠, 가야 할 길

패러다임의 전환



일방향

스포츠 1.0

국위선양, 전인교육 등
전통적 역할 강조



양방향

스포츠 2.0

국민 참여 제고



맞춤형

스포츠 3.0

경제적 가치 및
커뮤니케이션 중시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 신성장동력 창출

05 대한민국 스포츠, 가야 할 길

스포츠 정책의 초점 전환



국제대회에서의 선전 등 정책 수단으로 활용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기면서
스포츠의 행복과 가치를 공유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
및 스포츠산업 등 정책간 칸막이

상생과 협력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시너지 효과 발생

스포츠의 가치 증진, 스포츠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비전 필요

05/ 대한민국 스포츠, 가야 할 길 문화체육관광부

비전

국민 삶의 질 제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02
스포츠참여
환경 조성


03
스포츠 글로벌
경쟁력 제고

04
스포츠산업
신성장동력화

01
스포츠
공정성 확보

05/ 대한민국 스포츠, 가야 할 길 문화체육관광부

1. 스포츠 공정성 확보



개혁 상시화

...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판 공정성
전문성 확보**

...

상임 심판제
심판판정 상고제
심판 강등 및 퇴출제 등



스포츠 윤리 강화

...


체육지도자 검정시험
스포츠 윤리 과목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05 대한민국 스포츠, 가야 할 길


2.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생활속 구석구석 체육공간 조성




종합형 스포츠클럽, 국민체력센터,
작은 체육관, 스포츠버스

향유 범위 확대




전국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아이부터 노인까지 체육참여 지원



아이(리)그, 주말스포츠교실,
경로당 운동용품 지원등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13년 2,230명 → 14년 2,480명)

문화체육관광부

05 대한민국 스포츠, 가야 할 길

3. 스포츠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경기력 저변 확충

- 01 **체육영재 육성, 지역선수 과학적 훈련 지원**
- 02 **비인기종목 대학스포츠, 실업팀 지원 확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종목중 국내 프로팀없는 종목등 41개 종목
- 03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 지원**
- 04 **체육인 복지 강화**
연금 및 장학금 지급, 은퇴 후 대비 직업훈련 및 전직지원등

05 대한민국 스포츠, 가야 할 길

문화체육관광부

3. 스포츠 글로벌경쟁력 제고

태권도 정신을 세계로 전파



태권도원개원(144), 스포츠 한류 허브로 육성
사범, 시범단, 평화봉사단 등 파견 확대

2014인천, 2015광주, 2018평창대회 성공개최준비



문화행사와 연계, 국민축제로 지원

국제스포츠 영향력 확대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확대 지원

05 대한민국 스포츠, 가야 할 길

문화체육관광부

4. 스포츠산업신 성장동력화



스포츠산업진흥
토대 구축

스포츠산업 진흥법개정
체육시설 관련 규제 완화



스포츠강소기업
발굴 육성

유망 스포츠기업의 생산, 수출 지원
글로벌 스포츠마케팅 기업지원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스포츠 선순환생태계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양성 기관지원,
스포츠창업 지원,
국가대표 은퇴선수등의 사회적기업지원



제 2 부

세 셴 1

지방체육 활성화 방안

이 창 섭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지방체육 활성화 방안¹⁾

I. 지방체육의 현황

□ 지방체육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 노력 절실

- 지방체육은 95년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이후 양적으로 성장. 하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선할 점과 본질적으로 새로운 가치 추구의 노력이 절실함
- 최근 체육 관련 선진화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 부단히 시도되어 왔으나, 정부와 지방간의 견해 차이, 관련단체 간의 이해갈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시행 또는 중단
- 그동안 지방 체육(특히 엘리트스포츠)은 적지 않은 피해의식 속에 정부와 중앙관련 단체에 불만, 반감 지녀왔음. 국가대표 선수 육성은 지방에서, 성과는 중앙이 가져가는 형태가 그 대표적인 예. 따라서 정부나 중앙단체의 대부분의 노력은 지방체육과는 유리된 상태가 지속되어 왔음
- 작금의 체육 전반에 제기되는 비정상적인 제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결과제. 지방체육도 체육관련 비정상의 정상화와 병행하여 실질적인 정책과제 개발, 시행, 제도 개선 노력이 절실한 상황

□ 정부와 지방의 합심 노력이 가능한 배경 구비, 구체적 실천 가능 시점

- 한국 체육의 선진화 관련 노력과 실천은 이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배경을 갖추. 최고의 성공 열쇠로 기능 할 수 있는 지방체육의 수장 격인 시도체

1) 이 원고는 다음의 문헌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작성되었음: 1)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스포츠선진화 정책과제와 제도 개선안』(2013.11.06); 2) 이창섭(2003). 대전광역시 체육정책현황과 과제. 한국체육정책학회 제7차 학술대회 및 워크숍 주제 발표문; 3) 이창섭(2009).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대전 체육발전 방안. 2009년 대전 전국체전 성공개회 심포지엄 발표문; 4) 이창섭(2009). 제47회 체육주간기념 제28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발표문; 5) 이창섭(2012). 지역체육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제93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제50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주제발표문.

육회 사무처장들의 획기적인 인식 변화가 그 첫 단추

- 체육 발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에 버금가는 내용을 담은 시도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 “스포츠선진화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제안(2013. 11. 6)이 그 증거
- 정부와 지방에 연계된 체육 발전 방안 수립과 실천은 총론 이상으로 각론에서 갈등 소지가 다분. 속도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관련자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 반대 의견도 적극적인 참여의 또 다른 형태. 작금의 체육계 비정상의 표출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동력 제공

□ 지방체육 활성화, 엘리트 스포츠부문에 가장 많은 난제 산적

- 지방의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분야는 어느 정도 바람직한 발전 양상. 엘리트 스포츠 활성화가 가장 난제로 부각. 선수 자원 고갈, 요원한 선수 수급원의 다원화, 가중되는 필요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

II. 지방체육 활성화 방안

1. 지방정부의 체육정책 비전

-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정책 수립 및 행정전개
-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하는 엘리트 스포츠의 활성화
- 학교체육을 정상화하여 학원스포츠 및 엘리트 스포츠 활성화 추진
- 프로스포츠를 포함한 엘리트스포츠의 발전 및 안정적 체제 구축
- 체육시설을 지원하고 확보하여 관련 인프라 구축
- 스포츠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지방의 체육정책 추진 방향

- 지역민의 모든 연령, 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정 및 정책시행
 - 3개 체육회 주최·주관의 다양한 사업추진

- 엘리트 스포츠 이외에 노인, 유아, 여성, 장애인 대상 사업으로 확대
- 전 지역민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전 시민의 한 가지 이상 스포츠 참여 운동 전개
 - 생활체육의 참여율 제고
- 학교 엘리트 체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엘리트 스포츠 활성화 추진
 - 학생운동선수의 학과수업 정상적 참여 지도
 - 학교 스포츠 팀, 스포츠클럽의 지원 확대
 - 선수권익 프로그램 마련 및 전개
- 생활체육이 엘리트 스포츠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체계로 전환
 - 선진국 형 엘리트스포츠 육성 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엘리트 스포츠 枯死 방지
 - 생활체육회,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의 통합, 통합 전에는 자치단체장의 겸직 유도
 -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 실제적인 체육발전위원회 구성 운영(포괄적인 관련 인사로 구성)
- 체육시설의 계획적인 확보와 이를 위한 지원의 확대
 -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공간 확보 및 방안 모색
 - 체육시설분과위원회 설치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관리
 - 차별화된 시설 집적으로 경쟁력과 활용도를 증진
- 스포츠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창출
 - 지역 이미지와 정서에 부합하는 특정 스포츠 종목을 활성화 및 차별화하여 지역 스포츠의 브랜드화 추진
 - 각종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의 전략적인 유치

Ⅲ. 지방 체육 활성화 추진 과제 및 방안

1. 자치단체 체육행정/정책의 방향성 확립 및 한 방향 정렬

□ 자치단체장/교육감의 체육에 대한 인식 전환/관심도 제고

-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등)의 체육·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
 - 지방체육에 대한 시·도지사, 학교체육의 교육감 두 책임자간의 협조 운영 의지가 중요(관련정책이나 운영방침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 지역의 체육·스포츠 방향 및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 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의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한 인식전환 (종합성적 지상주의 인식 탈피)

○ 체육행정 주체의 체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 자치단체장, 교육감, 예산심의·의결권을 지닌 지방의회의원 등의 체육, 그리고 관련예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들에게도 체육정책 비전 포함한 사업 설명회 가질 필요 있음
- 올바른 이해를 가지도록 하는 노력도 체육지도자, 행정가들의 책임: 현재는 설득 노력이 절대 부족

□ 일관성 있는 체육정책의 방향 유지 방안 강구

- 체육·스포츠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기구(예: 체육발전위원회)구성 및 운영
 -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스포츠관련 행정가 몇 명의 의지에 따라 전적으로 의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자구책
 - 체육·스포츠는 그 가치나 철학에 근거하여 정책 시행 상 일관성 유지 할 수 있어야 함: 단체장이 바뀌어도 기본운영방향과 중요원칙은 일관되어야 함
 - 실질적 수준에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로 운영(형식적 운영 지양)
 - 자문기구 운영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공감대 확산에도 효과적
 - 합목적성 추구의 동력: 전문가의 자문은, 합법성 추구 가능성 높은 공무원의 사업추진 의지를 제고. 대안 제시 없는 비판으로 단정 짓는 경향도 일종의 편견

- ‘중장기 체육발전계획’ 수립
 - 자치단체장 경질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운영이 가능
 - 체육단체 사업지침서(체육행정 담당자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가능
- 체육 단체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 자치단체 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체육 전문가, 관련자들로 구성되는 가칭 ‘체육정책 평가위원회’ 운영: 현재 지방 체육단체에 대한 평가는 형식적 수준에 급급
 - 체육단체의 관행적 행정과 정책의 운영에 대한 긴장도를 유지하는 기능
 - 시도 의회 의원에 의한 사업 끼워 넣기, 단순한 발목 잡기 식 비판 가능성 감소
- 체육에 대한 대안제시/비판 집단 필요
 - 체육 정책에 대한 협조, 비판, 견제, 대안 제시 세력이 필요
 - 체육과 관련한 비정상의 정상화 효과 제고 가능
 - 체육인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의견 제시 가능
 - 원로 체육인, 선수, 학자, 지도자 등 체육 전 분야 관계자가 참여하는 단체 구성

2. 체육단체(시도 체육회) 법적지위 확보

□ 시도체육회 단체 성립의 법적 근거 확립

- 시도체육회에 독립 법인격 지위 부여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도체육회 독립 법인 지위 부여, 시도체육회 회장은 시도지사 겸임토록
 - 정부 및 자치단체의 시도체육회 예산 지원 근거(법적 장치) 마련
 - 중앙 체육단체(대한체육회 등)와 시도 체육단체와는 지부가 아닌 협력체제의 상호 독립 법인 지위 부여
 - 현재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지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대한체육회 정관 제 5조)로서 법인격이 아닌 임의 단체(민간경상보조 단체) 지위
 - 현재 재산권 행사, 예산 확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에서 많은 애로 사항
 -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예산확보가 곤란(민간경상보조금

- 으로 예산 편성, 지급): 지방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확보에 타격
- 임의단체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수익 사업의 어려움: 전적으로 자치단체 보조 사업비에 의존
- 자치단체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우, 행정적 예속으로 체육회 자체 판단에 기초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

3. 시도체육회(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회) 단체 통합

□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의 단체 통합 추진

○ 체육단체통합 배경

- 체육단체 통합 분위기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해도 무방. 자치단체에 서는 통합 필요성 요구, 시행 확산 중
- 시도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연합회의 종목별 통합 병행
- 선수와 회원의 이원(二元)적 구조화를 추진하여 회비에 의한 예산확보와 선수육성의 효율성 강화
- 중앙에서의 통합 여부나 시기(2017년 예정) 관계없이 지자체부터 통합추진

○ 체육단체의 통합으로 체육행정 전반의 효율성 극대화

- 스포츠와 관련된 각종행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 예산의 이중지출, 인적, 물적 낭비 방지 효과, 생활스포츠관련 예산증액 효과
- 스포츠클럽의 조직화와 육성 지원 확대 가능

○ 자치단체장(시도 체육회장)이 생활체육회 회장 겸직

- 단 기간 내 통합이 어려우면 자치단체장이 생체회장도 겸하도록 유도
- 지방체육단체가 중앙단체의 소속단체인 지부형태로 인해 자의적 판단과 실천에 애로. 예: 국민생활체육회의 시도회장, 사무처장 인준권 행사로 외압

□ 체육단체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체육관련 집단 간 화합을 기초로 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체육단체 통합이 업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최고의 방법
- 현 체제에서는 체육청소년과(시도청), 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체육회(가맹경기단체 포함),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간의 업무협조 분위기 조성 필요
- 자치단체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도체육회 특성상, 시·도 체육청소년과가 상위기관으로 체육회, 생활체육회 행정을 감독 관리하는 형태: 따라서 상호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경우 모든 업무의 비효율성이 높아짐
- 이 때문에 시·도 체육청소년과와 체육회간의 유기적 업무 협의체계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체육회의 전문성이 사장될 가능성도 있음
- 상호 인정의지 부족: 단체 간 서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 현실. 자치단체와 교육청간 관계도 큰 차이가 없음
- 협조분위기가 조성 되었을 때 시행착오의 최소화 가능(업무 효율성 극대화)
- 불협화음 시 체육인들 사이의 화합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침

4. 전국체전(소년체전) 운영 방식 개선

□ 전국(소년)체전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체육관련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

- 현재 46개 종목으로 비대화된 전국체전 운영은 많은 문제를 양산
 - 정치적인 타협에 의한 체전 정식종목 인정범위의 한계 제시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체전 관련 예산확보와 운영상 고충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필요
- 전국(소년)체전 운영의 과열로 인한 일회성 고액 예산 투입 문제가 심각
 - 중·장기적인 체육 발전 전략수립에 문제점으로 부각
 - 선수의 장기적 안목 육성이 아닌 단기적 성적(생색)내기에 급급
 - 시도 간 순위 경쟁 과열, 국민에게 외면 받는 그들만의 대회
 - 시도 간 선수 빼오기, 이적 전문 선수들의 몸값 폭등과 같은 문제를 양산
 - 자치단체장/교육감이 전국(소년)체전 종합성적에 연연하지 않도록 인식전환시키는 노력에 의해 일정부분 해결 가능: 제대로 된 체육 행정/정책 전개의 출발점
- 체전 경기종목 간, 중앙경기단체 간 협조와 이해가 관건
 -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의 종목 쿼터제를 도입하여 체전 슬림화 노력도 경기종목 간 불협화음, 중앙경기단체의 대한체육회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장애로 작용

5. 체육관련 규정 개정 및 정책 시행

□ 정부 차원의 지방 엘리트 스포츠 활성화 지원 강화

○ 지방의 우수 선수 육성비의 정부 지원 확대

- 지방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 경기력 활성화 예산, 국가대표 선수의 육성 경비는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담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우수 선수 육성 지원금이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하여 중앙경기단체로만 편중되는 지원 방식의 개선 필요
- 중앙경기단체에 편중된 지원방식이 체육단체 관련 부조리 발생의 원인
- 지방 소속 국가대표 및 상비군 선수와 국가대표를 육성하는 실업팀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
- 지방의 엘리트 스포츠: 갈수록 증대되는 복지예산 팽창, 세수 감소로 관련 예산 삭감, 팀 해체와 같은 자생력 감소 요인이 늘어나는 실정
- 엘리트 스포츠는 국가사업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간주하여 지방에 대한 관련 예산 확대 등의 국가 차원의 정책반영이 절실함

○ 지방의 기업 운영 실업팀 지원 강화

- 지방의 기업이 운영하는 실업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이는 지방의 엘리트스포츠 위축과 더불어 결국엔 자치단체나 시도체육회에게 팀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기업 운영 실업팀 13%, 시도체육회 운영 실업팀 28%)
- 지방 기업의 실업팀 운영을 위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추가 제공처럼, 정부 지원 정책 개발 필요

○ 지방 소재 국가공기업의 실업팀 운영 의무화

- 지방 이전 국가 공기업의 팀 창단이 전무한 실정. 문체부 정책 반영 미미.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체육의 진흥(4항: 공공기관의 한 종목 이상 팀 설치, 운영)사항의 강제 시행 필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대한 제재조치 강구 필요

- 체육발전 공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지방체육단체장을 포함한 봉사자들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자긍심의 하락이 현실. 봉사 기회 기피 현상의 확산. 지방의 소외된 종목의 경우 단체장 영입조차 어려운 실정. 이는 생활체육, 엘리트스포츠, 장애인체육 전반적 현상
 - 체육단체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폭 확대 검토, 경기 단체장 등 공헌자에 대한 예우개선, 각종 포상 기회 확대, 특히 정부 포상 추천의 기회

- 엘리트스포츠 선수 저변확대, 선수 수급원의 다원화
 - 현재 시도체육회의 선수 발굴 육성 정책과 사업은 위축 상황. 지역 경제 활성화 명분의 각종 대회 유치 등의 스포츠 마케팅 관련 사업에 치중해가는 경향이 뚜렷함
 - 중앙경기단체 역시 선수 발굴 육성보다 각종 대회 확장을 통한 유치비 경쟁으로 수익향상에 치중하는 형편
 - 전반적으로 선수 저변 확대노력을 전면 검토할 필요
 - 체육인재 발굴, 관리의 일원화, 선수 수급원의 다원화가 요구됨. 한국스포츠개발원과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체육영재센터 선수 발굴 사업의 차별화/일원화 필요
 -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입상 선수의 등록선수 유입방법 모색

- 전국규모 대회 지방 유치 경쟁 과열 방지 대책 강구
 - 전국규모 대회 개최지 결정 방법의 합리화
 - 전국대회(체전 등), 국제대회, 전국규모대회(중앙경기단체 개최)의 지방 유치 경쟁이 유치비 성격의 대회 개최비 급격한 인상 요인으로 작용
 - 중앙경기단체의 대회개최운영 실태 파악(예산 관련 정기 감사 등), 대회 유치 도시 선정을 위한 객관적/합리적 평가지표 개발 필요

 - 대회 유치 신청에 대한 신중한 검토
 - 자치단체장 실적 쌓기 용 사업의 유치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대회 개최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개최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결과 공개

-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특정 스포츠 종목의 지역 상징화 추진
(특정 스포츠 종목의 지역브랜드화 - 예: 강원도의 역도 등)
 - 특정스포츠의 지역상징화를 위해 해당종목 관련 시설의 예산 확보 추진(국내의 경우 남해군 직영 ‘남해축구클럽’)
 - 관련 경기단체에 대한 인프라구축용 행·재정적 지원확대

- 지역 전통 스포츠대회 개발
 - 특정 지역 하면 생각나는 수준으로의 지역과 특정스포츠가 연계된 지역스포츠 브랜드화. 춘천 동아마라톤 같은 유서 깊은 스포츠대회 개발

- 지역 내 행사 개최관련 정책시행 효율성 제고
 -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체육시설의 난립방지
 - 일회성, 이벤트성, 낫내기 식의 정치성을 띤 스포츠행사 개최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전문적 수준에서의 검토가 절실함
 - 생활체육회의의 경우, 소수 인원(정치 세력화 된 사람들)에 대한 혜택에 그치는 각종 대회 개최 사업보다 다수 혜택의 가능성 높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정책의 비중을 둘 필요
 - 각종 행사개최나 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결정
 - 체육회(가맹경기단체), 체육청소년과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올바른 최종 결정 유도: 민원에 의한 각종 행사 난립 및 예산낭비 요인 감소

- 경기단체 임원 구성, 선출 관련 규정의 보완
 -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가맹경기단체 임원관련 규정의 보완
 - 임원의 임기 1회 중임 허용, 선임임원 구성에 출신학교, 국가대표 출신, 비경기인, 여성임원 의무 충원 비율 제한은 인사 영입 한계를 지닌 지방 현실을 감안한 형태로의 보완이 요구됨
 - 현실적으로 지방이나 종목에 따라 대의원 구성도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음. 대부분의 이사들이 지도자나 교사로 충원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수인 상황
 - 예외 규정, 보완된 규정에 대한 검토 필요

6. 체육 시설관련 정책의 추진과제 및 방안

□ 지역사회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 학교 체육시설의 시민활용도 제고

- 수업시간에는 학생사용, 새벽과 저녁시간에는 주민 사용
- 학교 관리자(교장) 재량에 따라 일반인의 사용이 허락되나, 관리 유지비 소요, 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그 사용수준은 극히 제한적
- 지자체가 학교체육시설 리모델링(적은 예산 사용)으로 시설을 확보하고 시민 공동 활용 방안 모색. 특별히 전국규모 대회 유치(개최)시 기존 학교체육시설 활용, 신축 후 시민 공동 활용 방안을 검토
- 생활체육참여자의 학교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자치단체장 의지가 관건

○ 지역사회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의 학교체육 관련 활용도 제고

- 대도시의 경우 지대가 건축비를 상회하는 여건상 시민의 충분한 체육시설 요구 충족은 실현 불가능
- 활용 가능 시간대를 조정하고 사용료를 조율하여 학생과 시민 공동 활용률 제고

□ 공공체육·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으로 이용률 제고

○ 공공체육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 확대

- 스포츠클럽 회원의 사용기회 확대 목적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단체가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을 전문 지식과 경험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추진

○ 시도체육회의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 현재 시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각 가맹경기단체는 최소한의 자생력조차 갖추지 못한 실정
- 갈수록 지방의 체육관련 민간단체의 자체 수익 사업이 절실해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사업은 어려운 형편

- 다만, 공공체육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자체 조례에 의거 제반비용을 최하금액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어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문제
 - 또한 시설 운영 필수 인력을 규정에 따라 채용해야 하는 어려운 점도 존재: 시설운영 및 수익성 제고에 난제로 작용. 따라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법률이나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대규모 체육시설이 아닌 일반 훈련시설일 경우 경기단체로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치가 필요
 - 한편, 가맹경기단체는 규정상 시도로부터의 직접 위탁대상이 되지 않아, 시도에서 체육회로 위탁하여 경기단체가 운영하게 할 수는 있음
- 지역 내 스포츠 시설관련 정보 총체적 파악 및 분석
- 해당 지역 내 체육 시설 총망라된 지도를 작성해서 활용
 - 기본 시설(소규모 수영장 등) 제외한 기타 대규모 시설은 지역별 특성화, 차별화 전략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시행
 - 지자체 내 구역별로 관련시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시설 설치 우선순위 파악. 지방별로도 특성화, 차별화된 체육시설의 집적화 노력도 필요(예를 들어, 사격의 경우 충분 청원군이나 경남의 창원시)
 - 한정된 지역 공간 내 장기적 안목에서의 시설배치 계획을 작성
 - 대규모 스포츠 시설(예: 메인스타디움 등) 건립 시 심사숙고할 필요: 잘못 설치된 대규모 시설은 활용도는 낮으면서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시설로 전략하기 다반사. 지방재정에 부담 주는 애물단지가 허다

7. 체육관계자 위상 정립과 제고 및 처우 개선

□ 체육관계자에 대한 관련 교육 기회 제공

○ 교육 기회 제공

- 지방 체육단체는 보조단체로 분류되어 직무 교육 기회를 갖기도 어렵고, 체계적 교육지원제도도 없음
- 정부 정책, 관련 법규, 실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기회 자체가 없음. 결국 ‘알아서 하는 행정’, ‘구전에 의한 전달 방식의 실무 습득’,

- ‘체육단체 만의 행정’으로 각종 행정처리, 회계사무 등에서 다양한 문제 양산
- 3개 체육회 직원은 물론, 가맹경기단체의 행정, 회계 관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기회 필요
- 체육지도자, 관련자, 선수에 대한 체육의 가치, 발전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육. 은퇴선수의 사회진출 대비 사회적응 교육 기회 제공
- 내실 있는 내용의 관련 프로그램을 정부(또는 중앙 단체) 차원에서 개발하여 체계적인 교육기회와 프로그램 제공함이 바람직

○ 자치단체 체육 관련자(행정 관련자, 단체)에 대한 연수 기회

- 관련 공무원의 보직 순환으로 인해 전문성을 기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팀 내 구성원 간 다른 업무 스타일로 인해 내부의 협조조차 기하기가 어려움
- 체육에 관한 판단도 개인적, 주관적 판단에 따르기보다, 체육에 대한 올바른 비전에 따르는 방향이 필요. 체육, 스포츠에 대한 전문적 식견 구비를 위한 연수 기회 확대 실시가 요구됨

□ 체육인 위상정립과 제고, 처우 개선

○ 시·도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직원 위상 제고

- 발전, 혁신의 첫째 관건은 사람(체육회 직원)임을 중시
- 스포츠 및 체육전공자 충원하여 전문성 확보
- 체육회 행정능력제고(가맹경기단체 포함), 적극적인 연수 기회 제공
- 정부(중앙 단체) 차원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하여 연수 기회 제공

○ 지도자 처우개선

- 경기지도자의 처우 현실화(높은 이직 율로 고급인력확보 불가능)
- 자체 연수기회 제공. 지도자 자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연수 참가 등)에 대한 지원
- 학생운동선수의 타(他)시도로의 이적 동기 중 가장 큰 원인은 ‘지도자의 능력에 대한 불신’
-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국민생활체육회와 시도의 대응투자예산에 의한 급여 지급
- 급여 지급 이원화로 인해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현재 1년 단위 계약직). 근무 연한에 따른 급여 인상이 전무한 실정으로 처우 개선책 마련이 절실

- 엘리트 스포츠 지도교사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 각종 평가(승진관련)등에서 부가점수 부여 방안 등의 강구
 - 팀 및 선수 육성학교 관리자(교장, 교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관련 평가 시 비정상적 엘리트 체육 지도, 감독자를 인센티브 대상자에서 제외

제 2 부
세 셴 2

심판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방안

김 상 겸
동국대 · 서울 법대 교수

심판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방안

I. 들어가며

오늘날 스포츠에서 심판의 중요성은 세계평화와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는 장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이 국가 간의 경기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2월에 개최된 소치올림픽 여자피겨스케이팅에서 심판진이 객관적으로도 실수 없이 완벽한 경기를 펼친 우리나라 선수와는 달리 점프에서 실수까지 한 러시아선수에게 가산점을 몰아줘서 해당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된 사건, 과거 2002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조별 리그를 통과해 16강과 8강전에서 맞닥뜨린 스페인과 이탈리아 전에서 승리가 우리에게서 당연한 결과였지만, 상대국이었던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대한민국이 심판을 매수한 결과라며 자국의 언론 매체들이 연일 감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국가 간의 문제로까지 비화될 뻔한 사건 등을 보면, 오늘날 스포츠경기에서 심판의 공정한 판정이 선수 개인은 물론 국가 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을 반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스포츠는 국가차원이나 국제적 스포츠교류의 문제를 떠나 인간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임을 확인하였으며,¹⁾ 스포츠는 인간의 내면적인 욕구를 육체적 활동으로 표현함으로써 인해 건강을 증진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²⁾. 또한 골프에서 ‘박세리키즈’,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연아키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스포츠계에 첫발을 내딛는 어린 꿈나무들은 지역

1)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2) 헌법상 스포츠에 관한 권리가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가치·행복추구권)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보장된다. 스포츠란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기본적 관념 속에서 스포츠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스포츠 활동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보다 더 풍부하게 하는 활동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법률유보)의 규정을 넘어서는 국가의 통제, 금지 등 국가로부터 강제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의 자유에는 스포츠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활동하는 자유가 포함되며, 나아가 스포츠단체의 자치도 그 범주에 속한다. 현대적 의미의 스포츠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사회적응력의 향상을 위하여 인간의 잠재력을 촉발시켜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발달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김상겸,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 스포츠와 법 창간호, 스포츠법학회, 2000, 75-76면 참조).

마다 구축되어 있는 스포츠클럽의 가입·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은 어린 이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스포츠클럽 활동과 스포츠경기를 통해 친목과 사회성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사회생활을 자기가 속한 스포츠활동으로 투영해 바라보는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단체로 이루어지는 축구, 야구와 같은 구기 종목은 각 지역에 연고를 둔 상태로 프로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 지역, 기타의 동기로 프로스포츠 구단 중에 선호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해당 집단에 속하여 모임과 여가를 즐기는 국민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종목별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은 승부의 결과를 떠나서 선수는 물론 관중에게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판의 판정이 경기의 결과뿐만 아니라 스포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판정이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하다면 경기와 선수뿐만 아니라 스포츠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나아가 심판의 판정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일상화되고 스포츠산업이 기존 산업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심판의 판정에 대한 공정성시비가 계속 발생한다면, 국민은 스포츠에 대하여 불신하게 될 것이다.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점차 스포츠를 멀리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는 스포츠경기에서 관중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급성장 중에 있는 스포츠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스포츠정신을 훼손시키고 스포츠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판의 판정에 대한 공정성의 담보는 스포츠에 있어서 중요성을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심판의 판정에 대한 공정성시비는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 문제에 관련하여 심판의 판정에 대한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수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프로리그까지 형성되어 시즌마다 수많은 관중을 불러 모으면서 다수의 국민이 좋아하고 즐기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를 중심으로 심판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고찰한다.

3) 프로야구의 경우 3년(2011~2013) 연속 600만명 관객을 달성하였으며(마이데일리, '2013 프로야구 총 관객수는 '674만 3940명'...역대 3위', 2013. 11. 12), 프로야구 관객은 2,039,475명(2013)이다(국민일보, '프로축구 2013년 경기당 평균 7600여명...연맹, 각 구단의 관중 수 및 입장 수입공유', 2014. 1. 20).

II. 스포츠 종목별 심판의 위상 및 심판 양성과정

1. 스포츠 심판의 위상

(1) 심판의 개념

심판은 각종 경기에서 반칙·승패 등을 판정하는 사람이다. 영어로 엄파이어(umpire)는 탁구·야구 등에서는 주심이지만, 배구·농구 등에서는 부심을 가리키며, 주심은 레퍼리(referee)라고 한다. 심판은 경기자의 모든 것에 대하여, 공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규칙에 따라 경기의 개시·종료·반칙·득점·승패를 결정한다. 경기에 따라 1명인 경우와 주심·부심 등 수명인 경우가 있다.⁴⁾ 심판은 game official이라 불리며 심판 행위는 officiating이라 한다. official의 원 뜻은 타인에게 지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 정부 관리나 기업의 임원도 동일하게 호칭된다. 이러한 심판은 게임의 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⁵⁾

축구에서 심판은 심판원(Referee)이라 하고 협회가 발급하는 심판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심판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⁶⁾ 축구에서 심판원은 경기 중 역할에 따라 주심, 부심, 대기심으로 구분되며 그 직능은 경기규칙5(주심), 6(부심) 및 관련세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⁷⁾ 농구에서 심판은 경기를 담당하는 주심 1명과 부심 2명으로 구성된다. 심판들은 경기감독관 외에 기록원 1명과 보조 기록원 1명 그리고 숙련된 계시원 2명의 보조를 받는다. 계시원 1명은 경기 시계를 조종하며 다른 1명의 계시원은 24초시계를 조종한다. KBL은 매 경기당 3명의 심판을 배정하며 경기 중에는 주심이 다른 심판들을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 심판의 부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기감독관, 경기기술위원과의 협의 후 2명 또는 그 미만의 인원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심판들은 KBL이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⁸⁾

예를 들면 축구경기에서 심판(Arbitre)은 주심과 부심으로 구성되고 경기의 핵심이며 없어서는 안 되지만 결코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존재이다. 축구에서 심판은 공식적으로 1874년 처음 등장하였다. 심판을 뽑는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비난과 항의가 잇따랐다. 그래서 심판들은 1878년에 이르러서야 호각을 들고 경기장에 나타날 수 있었으며, 1890년까지는 그들을 가리키는 단어조차도 없었다.⁹⁾ 주심을 보조하는 2명의

4)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49994(2014. 2. 17. 검색).

5) 방열, “한국 프로농구의 심판문제 및 개선방안“,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스포츠교육학회, 2004, 160-161면.

6)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칙 제9조(심판원의 정의).

7)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칙 제10조(심판원의 구분) 제2항.

8) 대한농구연맹 경기규칙 제2장 제3조.

부심이 등장한 것이나, “경기를 주관하며, 선수들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반칙을 범한 선수들에게 제재를 가하며, 경기 결과를 공표한다.”라는 심판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심판판정분야에서 ‘비디오 판독’ 기법이 도입되고 있으나, 한번 내려진 심판의 결정은 절대 뒤집을 수 없으며 판정에 대해서도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만큼 지금 심판은 축구 경기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 1970년부터는 심한 반칙을 하거나 경고가 누적된 선수를 퇴장시키는 옐로카드와 레드카드 제도가 도입되었다. 벌칙이 누적될 경우에는 출장 정지를 명하여 선수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는 강력한 제재 방법이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심판은 국제축구연맹이 직접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심판을 둘러싼 몇 차례의 불행한 사건들(특히 유럽컵대회에서 자주 일어난)이 축구사를 얼룩지게도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심판의 명예를 훼손시켰던 사건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¹⁰⁾

(2) 심판의 권리와 의무

1) 심판의 권리

① 축구

축구에 있어서 심판은 경기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심에 의해 경기가 관리 되도록 매 경기마다 주심이 임명된다. 또한 플레이와 관련된, 득점 여부 그리고 경기의 결과를 포함한 사실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거나 경기를 종료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결정의 잘못을 깨달았거나 부심 또는 대기심의 조언에 따라 결정을 바꿀 수 있다¹¹⁾. 심판원은 경기 중 경기 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권을 갖는다.¹²⁾

② 야구

야구에 있어서 심판진은 주심과 3명의 루심으로 구성되며 게임을 관리한다. 주심은 스트라이크와 볼, 히트 바이 피치드 볼, 공격방해와 수비방해, 홈에서 주자의 세이프와 아웃 등을 판정하고, 각 루심은 각 루에서 주자의 세이프와 아웃을 판정한다. 모든 심판은 타자가 친 공의 파울·페어 여부를 판정하고, 어느 심판이든 투수의 변칙투구동작

9) 영국에서는 레퍼리(Referee), 독일에서는 지츠리히터(Sitzrichter)라 부른다.

10) www.krpia.co.kr.

11) 축구경기규칙, 24~25면.

12)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정 제24조.

(보크)을 선언할 수 있다. 야구에 있어서 각 심판원은 리그와 프로야구의 대표자이며 본 규칙을 적용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심판원은 선수, 코치, 감독 뿐 아니라, 각 팀의 임직원에게도 본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제지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규정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심판원은 본 규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재량에 의하여 재정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선수, 코치, 감독 또는 교체선수가 재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스포츠맨답지 않은 언행을 취하였을 경우 출전 자격을 박탈하고 경기장 밖으로 퇴장시킬 권한이 있다. 심판원이 플레이가 진행되는 도중에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였을 경우 그 플레이가 종료된 후 비로소 자격박탈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각 심판원은 자기 판단에 따라 다음에 열거한 사람들을 경기장으로부터 퇴장시킬 권한을 갖는다.¹³⁾

- 운동장 정비원, 안내원, 사진담당자, 기자, 방송국 직원 등과 같이 직책상 경기장 입장이 허가된 사람들
- 경기장에 입장이 허가되지 않은 관중이나 기타사람들

③ 농구

농구에서 심판들은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경기중단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는 경기감독관, 경기기술위원과 협의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가능한 한 빨리 심판위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¹⁴⁾

미국 농구관련 기사에서는 심판의 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심판은 규정상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득점을 결정하고 필요시 게임을 몰수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지닌다. 게임의 진행 중 주심과 부심 간에는 실질적 차이가 없으며 양자 모두 게임의 진행에 동등한 책임을 진다. 다만 경기의 속도에 비추어 각자의 책임은 수시로 바뀌는 코트내 자신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이로 인해 어느 한 심판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타 심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칙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KBL의 경기규칙에는 “심판은 다른 심판의 결정한 규칙에 대해 질의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 개시 30분 전(남자)이나 15분전(여자)에 발효되어 최종 스코어 선언과 더불어 종료되는 심판의 통제권한 중에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비열한 행위를 범한 선수나 코치 혹은 옆의 수행원을 코트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

13) http://www.korea-baseball.com/data/rule/rule_view.asp?BBS=A1&CAT=D01&NUM=1843&PAGE=1&PRNUM=9

14) 구규칙, 제2장 제5조.

도 포함되고 게임이 끝나고 심판이 코트의 경계선 밖으로 퇴장함으로써 스코어가 확정되며 그 변경은 불가하다.¹⁵⁾

심판들은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경기중단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는 경기감독관, 경기기술위원과 협의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가능한 한 빨리 심판위원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¹⁶⁾

④ 배구

배구에서 각급 심판은 급별에 따라 본회 및 각 시·도 경기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의 심판을 담당한다. 각급 심판은 소정의 수당을 지급 받는다. A급 심판은 국제 심판연수회 파견자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FIVB에 3년 이상의 등록과 소정의 의무를 다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¹⁷⁾

2) 심판의 의무

① 축구

축구에 있어서 심판원은 판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¹⁸⁾

- 심판으로서의 권위와 품위 및 도덕성을 유지할 의무
- 경기 중 긴급 상황 발생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할 의무
-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기 종료 후 별도의 사건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

② 야구

심판원은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의 퇴장 및 모든 규칙위반,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적절한 사유를 첨부하여 경기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음란하고 저속한 언어 등 무례한 행위를 하거나, 심판원, 트레이너, 감독, 코치 또는 선수를 구타하여 퇴장 당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경기종료 후 4시간 이내에 상세한 사항을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재는 심판원으로부터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를 퇴장시켰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적당하다고 인정되

15) 방열, 전계논문, 161면.

16) 한국농구연맹 경기규칙 제2장 제5조.

17) 대한배구협회, 심판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18)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정 제25조.

는 제재를 내리고, 그 사유를 당사자 및 그 소속팀의 감독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재금이 부과된 후 5일 이내에 커미셔너 사무처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경기에 출전하는 것도, 덕아웃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된다.¹⁹⁾

③ 농구

심판들은 경기 개시 전에 코트, 바스켓, 볼, 백보드, 그리고 계시원과 기록원의 장비들을 포함하는 모든 장비와 기구들을 점검하고 승인하여야 하며 기록석의 담당자들과 득점 및 계시절차 등을 확인한다. 심판들은 선수들이 손, 팔, 얼굴, 코, 귀, 머리, 또는 목에 장식 용구를 착용하고 플레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심판이 판단하기에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이 될 장비들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단단한 재질의 모든 장비들(깁스, 부목, 보호대 등)은 패드가 되어있어야 하고 날카롭거나 베일 수 있는 면이 노출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얼굴 마스크와 코 보호 장비는 얼굴의 윤곽과 맞는 것이어야 하며 끝이 날카롭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심판은 부상방지차원에서 모든 선수의 안경착용을 불허한다. 이러한 장비들은 매 경기마다 주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 중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농구경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못하거나 선수의 키나 팔 길이를 늘이기 위해서 또는 경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심판은 게임 볼이(2개) 공기의 압력 등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한 팀의 헤드코치(Head coach)가 경기 개시 전이나 피리어드 사이에 규칙이나 규칙해석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원한다면 심판은 의무적으로 다른 팀의 헤드코치도 의논하는 과정에 참가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만일 심판이 경기 상황에 대하여 어느 한 팀의 헤드코치와 의논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 지정된 심판이 경기 개시 및 매 연장 전 마다 볼을 토스하여야 한다. 주심은 골의 득점여부에 대하여 심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결정을 내린다. 또한 기록원 및 계시원과 견해차에 대하여서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판들은 경기개시 전에 필요하다면 각 팀의 주장을 만나야 한다. 심판들은 비정상적이거나 특이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스포츠 정신에 위배 되는 파울(Unsportsmanlike Foul), 실격퇴장 되는 파울(Disqualifying Foul), 펀칭(Punching), 파이팅 파울(Fighting foul)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록지상에 반드시 보고(기록)해야 한다.²⁰⁾ 심판은 게임을 통제한다. 심판은 게임 혹은 연장전을 시작할 때 중앙에서 점프볼을 토스하여 맨 마지막 득점을 승인하는 일로

19) http://www.korea-baseball.com/data/rule/rule_view.asp?BBS=A1&CAT=D01&NUM=1843&PAGE=1&PRNUM=9(대한야구협회, 야구규칙 심판원, 심판원의 보고와 의무, 9.05).

20) 한국농구연맹, 농구규칙, 제2장 제4조.

끝난다. 그 중간에는 하프타임 개시 3분 전에 이를 각 팀에게 알려주고 심판간의 판정 상 이견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²¹⁾

④ 배구

농구에 있어서 각급 심판은 소정의 복장으로 심판에 임해야 하며 협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C급 및 B급은 연간 5회 이상 주심, 부심, 선심, 기록 등 심판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상기 의무회수는 3개 이상의 대회 심판 실적이어야 한다. 만일 2년 이상 계속하여 실적이 미달될 때에는 그 자격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A급은 본 협회 또는 연맹 주최의 공인된 전국 규모대회에서 주심 3회, 부심 3회 이상의 심판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자격이 정지된 심판원이 심판 활동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에서 주관하는 심판 재교육과정에 참가하여 소정의 시간(8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²²⁾

2. 스포츠종목별 심판 양성과정

이하에서는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많은 선호도와 관객을 동원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심판양성과정을 알아보려고 한다.

(1) 축구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정에 따르면 심판원은 협회 자격증 등급에 따라 4급~1급까지로 구분되고 있고 이 중 국제심판원은 1급 심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자로 하고 있다(제10조). 각 급수별 심판원의 관장경기는 다음 <표 1>과 같다(제11조).

<표 1> 심판원의 관장경기

심판 급수	관 장 경 기
4급	초등부 및 스포츠클럽(동아리)간 경기의 주, 부심
3급	중등부 경기의 주, 부심
2급	대학부, 고등부 경기의 주, 부심
1급	각급 일반부 경기의 주, 부심 및 위임받은 국제 경기
국제심판	국제 경기의 주, 부심 및 국내 경기의 주, 부심

※ 상위급 심판은 하위급 경기의 주, 부심을 할 수 있다.

21) 방열, 전개논문, 161면.

22) 대한배구협회, 심판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3~4급에 해당하는 심판원의 교육과 자격부여에 관한 사항은 <표 2>와 같으며, 1~2급 심판원은 <표 3>과 같이 기존의 2~3급 심판원 중에 별도의 승급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양성하고 있다.

<표 2> 3~4급 심판원 교육 및 자격부여

심판 급수	응시자격	교육진행	자격평가	자격부여
4급 (자격부여)	- 나이 : 만2세 이상 - 시력 : 좌우 1.0(교정) - 해외여행 미결격자	- 내용 : 이론, 체력, 실기 - 기간 : 3일~5일 - 세부사항 : 상기의 기준으로 별도계획	이론, 체력 및 실기	이론/실기 각 60%이상 취득 & 체력측정 합격자
3급 (자격부여)	- 나이 : 만 16 - 시력 : 상동 - 해외여행 미결격자	- 내용 : 이론, 체력, 실기 - 기간 : 6일 - 세부사항 : 상동	상동	상 동 (단 점수만 65%로 상향)

<표 3> 1~2급 심판원 승급기준 및 국제 심판원 자격부여 및 활동²³⁾

2급 (승급)	① 아래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2급 심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1. 3급 심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2. 총 40회 이상의 공식경기에 주, 부심으로 활동한 자 3. 협회가 지정하는 종합병원의 신체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 4.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5.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2급 심판 자격증은 위 ①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중에서 2급 심판 승급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부여한다. ③ 2급 심판 승급심사기준은 별지 3과 같다.
1급 (승급)	① 아래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 1급 심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1. 2급 심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2. 총 50회 이상의 공식경기에 주, 부심으로 활동한 자 3. 협회가 지정하는 종합병원의 신체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자 4.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5.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1급 심판 자격증은 위 ①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중에서 1급 심판 승급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부여한다. ③ 1급 심판 승급심사 기준은 별지 4와 같다.
2급 이상의 특례 승급심사대상	2급 이상 심판 자격을 취득함에 있어 이전급 승급(자격취득)시 상위 5%이내의 인원은 승급에 필요한 해당 경기수(2급 승급시에는 40회, 1급 승급시에는 50회의 공식경기 주,부심으로 활동)를 충족할 경우 1년 경과 후라도 승급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3)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정 제15~18조.

국제심판	<p>① 국제심판으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 자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급심판으로서 당해 연도 FIFA의 국제 심판 선발 기준에 적합한 자 나. 국제심판으로서 품행을 갖춘 자 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평가 과목 : 실기, 영어 및 체력 3. 평가 합격 요건 : 실기평가 80% 이상, 영어 회화 및 필기 평가 각 40% 이상, 국제심판 체력측정에 합격한 자. <p>② 위 ①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가 FIFA에 추천한다.</p> <p>③ 위 ②항에 의해 추천된 자에 대해 FIFA가 당해연도 국제심판으로 승인할 경우 국제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p> <p>④ 위 ③항에 의하여 국제심판으로 배정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협회 심판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국제 경기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p>
------	---

1~2급 심판원의 승급을 위한 승급심사기준²⁴⁾은 <표 4>, <표 5>와 같다.

<표 4> 2급 승급시험 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심사대상	심사기준	배점	총점	합격점
활동평가	- 초/중등부 현역 리그	- 심판배정 경기 수 - 포상유무 - 징계유무	60점	100점	75점
	- 초/중등부 리그 플레이오프, 왕중왕전 - 초/중등부 전국 토너먼트 대회		40점		
이론시험	- 경기규칙 - 컴퓨터 활용능력 등	- 교육 후 시험성적	100점	100점	75점
체력검정	- 체력측정기준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합격결정				

* 세부 배점 기준은 심판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승급 배점표에 의한다.(활동평가 승급 배점표는 추후 공지 예정)

<표 5> 1급 승급시험 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심사대상	심사기준	배점	총점	합격점
활동평가	- 초/중등부 현역 리그	- 심판배정 경기 수 - 포상유무 - 징계유무	60점	100점	75점
	- 초/중등부 리그 플레이오프, 왕중왕전 - 초/중등부 전국 토너먼트 대회		40점		
이론시험	- 경기규칙 - 컴퓨터 활용능력 등	- 교육 후 시험성적	100점	100점	75점
체력검정	- 체력측정기준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합격결정				

* 세부 배점 기준은 심판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승급 배점표에 의한다.(활동평가 승급 배점표는 추후 공지 예정)

24)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정 별지 4.

상기와 같이 축구심판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3~4급 심판원 양성은 대한축구협회가 대학²⁵⁾ 등과 협력하여 축구심판을 희망하는 일반인에까지 문호를 열고 있다.

(2) 야구

야구심판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협회(KBA) 산하 단체 및 야구연합회 소속 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야구위원회와 대한야구협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연합회, 명지전문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기 야구심판 양성과정’을 개강(2012. 11. 9)하여 일반과정(일반인 대상)과 전문과정(야구심판 대상)으로 나누어 모집하여 일반과정 100명, 전문과정 80명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과정을 수료하면 한국야구위원회와 대한야구협회 산하 단체 및 야구연합회 소속 심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활동기회)이 주어진다. 단 한국야구위원회 심판은 대한야구협회 소속 심판 1년 이상 활동 후 자격을 부여한다. 과정별 교육시간은 일반과정은 총 160시간, 전문과정은 64시간의 과정으로²⁶⁾ 진행되며 교육과목으로 야구심판이란, 야구규칙, 스포츠심리학, 응급처치 등을 학습한다.

또한 한국야구심판아카데미에서도 1982년부터 매년 겨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야구심판 강습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이곳을 수료한 많은 일반인들이 각종 사회인야구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고, 대한야구협회, 대한소프트볼협회, 서울시 야구협회, 경기도 야구협회 등에서 전문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야구심판아카데미에 소속되어 사회인야구리그에서 공식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현재 80여 명에 이르며, 이번 강습회를 통해 2014년에도 함께 할 신입심판을 모집할 예정이다.²⁷⁾

(3) 농구

프로농구연맹(KBL)의 프로농구심판 선발방식 중 우선선발 방식에 따르면 국제심판자격 소유자, 대한농구협회 심판자격자, 프로농구 은퇴선수출신 중에 1차로 선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4주간의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약 2년에 걸친 수습과정을 거친 후, 필기 및 실기시험 최종합격자에게 최종적으로 심임 심판자격 부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심

25) 우석대학교(총장 강철규)는 대한축구협회(KFA)로부터 3급 심판 자격증 코스를 인가받아 축구 심판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6일 우석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엿새간 우석대 체육관 강의동 및 대운동장에서 열린 3급 심판 자격증 코스에 40여 명이 참가해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받았다. 조현철 우석대 체육학과장은 “이번 심판 양성 프로젝트로 초·중·고 주말리그뿐 아니라 각급 대회의 원활한 심판 운영을 위한 인적 자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전북일보, “우석대, 축구 심판 양성 본격화 축구協, 3급 심판 자격증 코스 인가”, 2011. 6. 26. 참조).

26) 파이낸셜뉴스, “제4기 야구심판 양성과정, 11월9일부터 개강”, 2012. 10. 17.

27) <http://www.umpire.or.kr/study/2013.php> <2014. 2. 21. 검색>

판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 과목과 심판자질의 향상을 위한 정서교육 그리고 해외파견에 의한 특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 정서교육은 국내외 대학교수 및 각계의 유명인사를 초빙하여 워크숍과 특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특수교육은 우수심판에 선정된 심판을 대상으로 매년 미국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TRY OUT' 시 심판을 배정하거나 NBA 심판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프로규칙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바가 있다.²⁸⁾

현재 KBL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KBL 심판 아카데미'를 경기규칙, 심판기법, 이론 및 실기교육, 체력 테스트 등 프로농구 심판들이 시즌을 앞두고 시행하는 교육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KBL 주최 대회에 교육생들을 배정하여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우수 수료자는 KBL 심판으로 채용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KBL 은퇴선수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KBL 심판 아카데미'는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KBL 센터 5층 교육장(이론교육)과 충무체육관(실기교육)에서 주 2~3회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경기규칙, 심판기법 및 이론, 체력, 실기 Test 등으로 구성되었다.²⁹⁾

한국대학농구연맹에서도 심판의 저변확대와 우수한 심판 양성과 한국대학농구연맹 및 한국농구발전에 기여하며 경기력 향상을 도모키 위해 심판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하여 48시간에 걸쳐 농구 심판 이론 및 실습, 응급처치를 위한 테이핑 요법을 학습토록하여 양질의 심판을 양성하고 있다.³⁰⁾

(4) 배구

배구에서 심판의 등급은 A, B, C급 국제심판후보 및 국제심판으로 구분하며, 별도로 필요시에 명예심판원을 둘 수 있다.³¹⁾ 등급별 심판 자격으로는 아래 <표-6>과 같으며 등급별 자격취득 및 승급절차는 <표 7>과 같다.

28) 방열, 전개논문, 164-165면.

29) http://www.kbl.or.kr/news/notice/news_content.asp?num=15780&page=8 <2014. 2. 19. 검색>

30) [http://www.kubf.or.kr/servlets/front/board/action/board?command=CONTENT&listcount=10&curpage=1&orderby=&direction=&board=notice&board_seq=1157&b_cate=&b_search=\(2014. 2. 21. 검색\).](http://www.kubf.or.kr/servlets/front/board/action/board?command=CONTENT&listcount=10&curpage=1&orderby=&direction=&board=notice&board_seq=1157&b_cate=&b_search=(2014. 2. 21. 검색).)

31) 배구협회, 배구심판원에 관한 규정 제3조.

〈표 6〉 등급별 심판의 자격사항³²⁾

등 급	자 격
국제심판, 국제심판후보	국내·외에서 거행되는 모든 경기의 주심, 부심, 선심, 기록
A급	국내에서 거행되는 국제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의 주심, 부심, 선심, 기록
B급	중학교 이하 경기의 주심, 부심, 선심, 기록 및 고등학교 이하 경기의 부심, 선심, 기록
C급	초등학교 이하 경기의 주심, 부심, 선심, 기록 및 중학교 학교의 부심, 선심, 기록 및 모든 경기의 선심, 기록

〈표 7〉 등급별 심판의 자격사항 및 사정기준³³⁾

등 급	자 격
국제심판, 국제심판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연수회 강사자격은 배구규칙에 관한 것은 전현 국제심판원 이상자³⁴⁾. - 사정기준 : 심판연수회 사정기준에 따라 각 과목(실기60%, 필기30%, 기록 10%, 구두시험은 참고사항)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며 어학(영어)이 추가되며, 출석률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고서는 안전수강 하여야 한다.
A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의 의무를 다한 B급 심판원으로서 자격취득 후 만 2년을 경과한 자로 각 시·도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시니어 국가대표로 활동한 은퇴선수로서 본 위원회가 주관하는 심판연수회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다음 본회에 추천된 자.(단, 본회로부터 징계 중이거나 출전정지 1년 이상인 자는 제외하며, 만 2년이라 함은 차년도의 동월에 시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 사정기준 : 심판연수회 사정기준에 따라 각 과목(실기60%, 필기30%, 기록 10%, 구두시험은 참고사항)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과락(50점)이 있을 시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출석률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고서는 안전수강 하여야 한다.
B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의 의무를 다한 C급 심판원으로서 자격취득 후 만 1년을 경과한자 또는 실업선수로 활동한 자로 본 위원회가 주관하는 심판연수회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 한 다음 본회에 추천된 자.(단, 만 1년이라 함은 차년도의 동월에 시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 사정기준 : 심판연수회 사정기준에 따라 각 과목(실기60%, 필기30%, 기록 10%, 구두시험은 참고사항)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과락(40점)이 있을 시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출석률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고서는 안전수강 하여야 한다.
C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위원회 또는 각 시·도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C급심판연수회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다음 주최자와 본회에 추천된 자 - 사정기준 : B급과 동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졸업 후 등록된 현역선수는 C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여 선심 및 기록원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단, 동일종별 중 동일성별의 심판은 볼 수 없다. - 초·중·고·대·일반(해의 취업 포함) 팀의 트레이너, 코치, 감독으로 등록된 임원은 연맹 대회의 경우 심판원으로 임할 수 있다.(단, 동일종별의 심판을 볼 수 없다.) - 전국규모연맹체는 연맹 주최 각종 공인대회의 7일전에 본회 심판위원회에 통보·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대회에 임하도록 한다.

32) 배구협회, 배구심판원에 관한 규정 제4조.

33) 배구협회, 배구심판원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9조

34) 배구심판원에 관한 규정 제8조(강사의 자격).

최근 대한배구협회는 호남대, 스포츠과학 연구소(소장 조규정)와 함께 엘리트 배구심판 양성과정을 활성화 하고 있다. 대한배구협회와 호남대 스포츠과학 연구소는 지난 2013년 7월 6일~8일까지 사흘간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대학생과 실업팀 선수출신 49명(남 45·여 4명)을 대상으로 배구 국제심판 양성을 위한 배구심판 아카데미 연수과정(VolleyBall Referee Academy)을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광주시 배구협회 고광삼 회장은 “과거 화려했던 노장 심판들이 은퇴함에 따라 최근 각종 경기에서 심판부족 현상이 일어나 엘리트 배구심판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연수 이수자는 2015년 열리는 광주 U대회 심판과 경기 운영요원으로 추천할 예정이다”라고 밝힌바가 있다³⁵⁾.

Ⅲ. 심판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한 심판 판정의 문제점

1. 축구³⁶⁾

축구의 경우 국내 심판들의 판정실책 요인에 관하여 199개의 원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체 및 체력 요인(30.2%)”, “심리적 요인(27.1%)”, “환경 요인(26.6%)”, “경기규칙 요인(14.1%)”의 4개 일반영역에 대한 판정실책 요인이 도출되었다. 우선 가장 많은 실책유인으로 파악된 “신체 및 체력 요인”에 관하여 살펴보면 “과도한 심판배정으로 피로가 누적될 때”, “신체적 컨디션이 좋지않을 때”, “선수들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따라가지 못할 때”, “힘이들어 선수 또는 볼 접근이 어려울 때”, “후반적 체력이 고갈될 때” 등이 있었다. 둘째로, “심리적 요인”은 “집중력이 떨어질 때”, “심판판정에 자신감이 없어질 때”, “중요한 시합에 심판 배적이 되어 부담될 때”, “관중이 많아 부담될 때” 등이 있었다. 셋째로, “환경 요인”은 “감독 코치의 거친 항의가 있을 때”, “동료 심판과의 판정 불일치 및 호흡이 맞지 않을 때”, “학부모 및 관중의 야유와 욕설이 있을 때”, “예선 탈락이 확정된 경기에서 심판 판정을 할 때”, “철저한 경기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심판으로 나갈 때”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경기 규칙 요인”은 “경기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추측이나 예측으로 판정 하였을 때”, “새로운 경기규칙을 숙지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 이 밖에 기타 요인으로 진술한 원자료를 살펴보면 “과거 항의한 팀에 대한 보복”,

35) 광주일보, 배구협·호남대스포츠연구원 배구심판 양성 아카데미, 2013 .7. 9.

36) 석춘희, 축구 심판들의 판정실책 요인에 관한 심층적 분석, 한국여가학회지, 제9권 제2호, 한국여가학회, 2008, 4면.

“시력이 좋지 않아서”, “나와 관련된 팀과의 경기” 등으로 진술되었다.³⁷⁾

2. 야구

2013년 7월 28일에 일본프로야구 오릭스에서 활약하던 이대호가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가 자신의 프로 경력 중 첫 퇴장을 당한바가 있다. 이대호는 세이부돔에서 열린 세이부와의 원정경기에서 심판의 삼진 판정에 격렬히 항의하자 이에 함께 항의하던 오릭스 감독도 동반 퇴장을 당하였다. 이대호의 헛스윙 상황을 심판은 헛스윙 삼진으로 판정하였으나 이대호는 파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대호가 격렬한 항의를 감독까지 덕아웃을 박차고 나와 거들다가 동반 퇴장을 당하였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이대호가 심판의 심기를 건드리는 언짢은 말을 했고, 구심이 심판의 권한으로 곧바로 퇴장 명령을 내리자, 이 조치에 대해 오릭스 코치진 모두가 뛰쳐나와 구심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구심의 가슴을 밀치게 되어, 결국 감독도 퇴장 명령을 받게 되는 어수선한 상황에 처한 오릭스는 전열이 흐트러져 세이부에 0대7로 완패하고 말았다.³⁸⁾ 야구에서는 이처럼 한 순간에 투수가 던지는 빠른 구속에 대한 정확한 판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타석에 선 선수와 팀에게 심판 판정에 대한 강한 불신에 의한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 위의 예와 같이 영봉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출범 초기부터 그랬지만 요즘에도 프로야구는 또 다시 심판 판정 때문에 시끄럽다. 2013년 6월 대구 경기에서 KIA 감독은 ‘4심 합의 판정 번복’에 불복해 선수들을 그라운드에서 철수시켰다. 이튿날인 30일 감독은 “심판들도 각성해야 한다”고 작심한 듯 쓴 소리를 했다. 이에 대하여 익명을 요구한 한국야구위원회(KBO)심판위원은 “요즘은 경기장 가는 길이 두렵다”고 했다. “나는 프로야구 심판입니다. 푸른 그라운드, 그 위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 포함돼 있다는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심판복을 입은 후 강산이 변할 만큼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아직도 야구가 참 좋습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 속에서 꼬박 네 시간을 버티는 날도 있고, 파울 타구나 투수의 강속구에 얼굴을 맞을 때도 있지만 심판직을 향한 열정은 변하지 않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 경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야구장 가는 게 무섭다, 두렵다’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최근 프로야구에 불고 있는 판정 논란 때문입니다. 2013년 6월 15일 LG-넥센전 2루 오심이 시작이었죠. 조종규 심판위원장이 넥센

37) 석춘희, 전계논문, 4면.

38) 스포츠조선, “이대호, 심판 판정 불만 프로 경력 첫 퇴장”, 2013. 7. 28.

더그아웃을 찾아가 고개를 숙인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지난 23일에는 심판이 새로 바뀐 투수 교체 규칙을 숙지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판이 오심을 했거나 규정을 몰랐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판은 명예직입니다. 팍팍한 출장 일정과 고단한 생활이 반복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깨끗하고 분명한 판정을 내린다는 자부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오심 심판’, ‘자질 부족’으로 낙인찍힌 심판들은 가족과 친구들을 향한 비난까지 감내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줄어들고, 고과 점수가 깎이는 것보다 더 큰 아픔입니다.”³⁹⁾

위와 같이 야구심판들은 나름의 사명감과 공정한 판정을 내리겠다는 내적인 다짐을 통해 매 경기에 임하고 있음에도, 인간이 가진 물리적인 한계에서 오는 실수와 간혹 일부 심판에 의해 발생하는 스포츠범죄 등의 전력들이 투영되어 선수, 코치진, 관중에 의한 오심판정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구단과 코치 선수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경기에 임하다가 심판의 오심으로 경기 전체의 흐름을 상실하게 되어 억울한 사항에 이르게 되는 측면은 항상 상존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3. 농구

최근 인기가 하락 중인 프로농구에서도 해당 종목 전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오심이 또 나왔다. 원주동부는 서울SK와의 원정경기에서 2점 차로 뒤지던 종료 4.4초 전 마지막 공격 기회에서 동부 선수의 골밑 돌파를 막은 SK 선수가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음에도 그대로 경기를 끝낸 것에 대해 불복한다며 제소하였고, 파울을 한 SK선수도 “팀 파울이 남은 상황이라 파울로 끊으려 했는데 경기가 끝났다”며 어리둥절했을 정도다. 2013년 시즌의 경우 오심에 불만을 품은 구단이 한국농구연맹(KBL)에 공식적으로 제소한 것 만도 벌써 세 번째다. 2012년 11월 서울SK와 고양오리온스 경기에선 두 차례 결정적인 판정 실수가 나와 KBL 심판위원회가 오심을 인정했음에도 경기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또한 2012년 12월14일에는 경기 중에 SK 선수가 전주KCC 선수를 고의로 팔꿈치가격을 했지만 심판들은 아예 보지도 못했다. 더구나 제소를 신청한 3경기 모두 SK가 관련돼 있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KBL 홈페이지에는 심판의 자질 문제를 비판하는 과격한 글들이 많이 올라 있다. KBL은 거의 매년 시즌 오픈을 앞두고 심판위원장을 바꾸지만 정작 심판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2013년 시즌에 심판들은 등에 자신의 이름 석자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코

39) 일간스포츠, 어느 심판의 심경 토로 “요즘은 야구장이 두렵습니다.”, 2013. 07. 01.

트에 나섰다. 일종의 판정 실명제다. 그럼에도 오심 논란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스피디하고 몸싸움이 유독 많은 농구 코트에서 오심 논란은 나올 수 있다. 오심 논란으로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심판들은 “심판도 사람이다. 실수할 때가 있다”고 변명한다. 전지전능한 판정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명명백백한 오심은 안 될 일이다. 오심 논란으로 불신이 쌓일 때마다 팬들은 하나 둘씩 코트를 등지기 마련이다. 농구가 규칙대로만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말이다. 프로농구는 한때 겨울 스포츠의 ‘꽃’으로 불렸다. TV 중계 시청률은 겨울 스포츠의 라이벌이라는 프로배구에 밀린 지 오래다. 오심 논란이 터질 때마다 KBL은 문제의 심판에 대해 같은 배를 탄 농구인이라는 동정 속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오히려 화를 키운 셈이다. 과연 이번에는 달라질까. KBL은 특단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떨어진 인기를 회복할 길이 없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⁴⁰⁾

4. 배구

배구 경기도 다른 예외 없이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3. 11. 26. 국내 프로배구의 역사를 바꾼 경기에서 ‘110점(56 대 54)’으로 단일 세트 사상 최다 점수 기록이 나온 대한항공과 러시앤캐시의 경기에서 ‘오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오심은 대기록이 작성된 3세트에서 나왔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확인 결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당시 대한항공-러시앤캐시 경기의 3세트 40-40에서 러시앤캐시에게 1점과 서브권이 부여돼야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KOVO에 따르면 이 때 대한항공 김종민 감독은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다 옐로카드를 받았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대한항공은 2세트에 레프트 광승석이 이미 옐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김 감독은 한 단계 더 강한 레드카드를 받아야 했다. 배구경기 규칙 21.4.2항에는 ‘한 경기에서 동일 팀원이 불법 행위를 반복하면 제재가 누적된다’고 나와 있다. 이 규칙대로 적용돼 김 감독이 레드카드를 받았다면 러시앤캐시에 1점과 함께 서브권까지 자동으로 갈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경기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된 탓에 심판진, 기록원, 양팀이 모두 실수를 눈치채지 못해 이 규칙의 적용 없이 계속 경기를 이어나가게 됐고 경기는 결국 56-54라는 대기록을 낚으며 대한항공의 승리로 끝났다. 2013-2014 V리그 운영 요강에 따르면 ‘주심이 규칙·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심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정상 재심은 경기 중에만 가능하다. KOVO는 “당시 러시앤캐시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재심

40) 세계일보, “농구코트 끊임없는 오심… 특단대책 절실”, 2014. 1. 6.

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나온 기록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KOVO 관계자는 세계기록 확인 여부에 대해 “국제배구연맹(FIVB)에서도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3세트의 득점, 시간(59분) 등의 기록이 가장 많고 길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공식적인 세계기록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⁴¹⁾.

이처럼 배구에서도 축구, 야구, 농구 등과 같이 심판진의 규정숙지 미숙과 명백한 오심에 임에도 재심을 요청시한(게임 종료 전까지) 도과 등의 이유로 오심에 의한 경기 결과를 바로 잡지 못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IV. 심판 판정의 공정성 확보방안

1. 심판의 전문성 확보방안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97년 2월 11일부터 3일간 미국일본 프로야구 심판원 등을 초청, KBO소속 심판원 36명을 대상으로 심판원 자질향상을 위해 미국 아메리칸리그 심판위원장과 일본의 센트럴리그 심판총무, 스포츠 전문변호사, 마케팅 컨설턴트를 초청해 야구규칙·심판철학 및 교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⁴²⁾ 심판은 100% 윤리성과 기술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심판 판정에 대하여는 국가 공권력에 준하는 질서유지 제도가 스포츠 게임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점증하는 야구팬의 이탈을 막지 못한 채 자멸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야구심판 양성과정에는 전문 이론, 기술, 영어, 교양 등의 교과목 충실한 학습을 통해 전문 인력을 길러내고 있는 현재의 심판 양성 과정에 윤리성의 배가를 위한 교과 선정이 필요하다. 이는 윤리의식이 아무리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심판이라 하여도 전광석화 같은 공의 안착에 대한 순간적인 판단과 소속 팀 승리에 목마른 선수와 팬 등의 야유와 압력에 흔들림 없이 공정한 판정의 첩경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리의식을 중점으로 한 심판의 전문성 함양 방안은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배구, 농구에서도 해당 종목에 적합한 새로운 윤리의식의 증진을 목표로 심판 양성과정의 교과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배구연맹(KOVO)도 2013년 12월 KOVO전문위원 및 심판 그리고 연맹 직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하는 교육에서 최근 경기에서 나온 판정 논란 및 특이사례에 대한

41) 국민일보, “역사 바꾼 ‘56-54’ 3세트서 ‘오심’ 있었다…기록은 인정될듯”, 2013. 11. 28

42) 경향신문, “심판원 자질향상 교육”, 1997. 2. 5.

비디오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규칙적용 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감독관, 심판의 역할 및 소속감 고취를 위한 정신교육을 진행하였다. 금번 교육에서는 오심사례 분석 외에도 FIVB신규 규정 및 전반적인 로컬룰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심판들의 규정 숙지와 규칙 적용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 외에도 같은 월 제2차 기술위원회(경기운영위원장 진준택)를 개최하여 경기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남, 녀 각 팀 감독들이 모여 페어플레이, 과도한 항의 자제 등 V리그의 공정하고 원활한 경기 운영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갖았는데, KOVO의 교육사례는 다른 종목에서도 참고할 만하다.⁴³⁾

또한 영국이나 기타 유럽에서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선수들이 의무적으로 심판 코스에 가입하여 심판과정을 이수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KFA도 지도자 강습회나 심판 강습회 또는 세미나에서 역할을 바꾸는 형식의 교육을 계획 실행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이 페어플레이 정신을 지켜나가는 데에 이바지할 것임을 기대하며 계획을 추진한바 있다.⁴⁴⁾

2. 심판의 공정성 확보방안

스포츠 경기는 각 경기 특성에 따라 별도의 경기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판 판정의 불공정 유발 요인 등을 보면 모든 종목이 유사한 요인에 의하여 심판판정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됨을 볼 수 있다. 상기에서 논의 한 바대로 축구경기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정치 못한 심판 판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구기 종목은 거의가 공통적으로 심판에게 높은 수준의 체력과 강인한 정신, 주변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정을 요구한다.

먼저 불공정한 심판 판정에 가장 큰 유발 요인에 해당하는 ‘신체 및 체력 요인’에 해당되는 “과도한 심판배정으로 인한 피로”, “신체적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감기 또는 부상 때문에”, “선수들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따라가지 못할 때”, “힘이 들어 선수 또는 볼 접근이 어려울 때”, “후반적 체력이 고갈될 때”와 같은 신체적 측면과 체력적 측면이 판정 실책의 중요한 사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한국 축구 심판들의 판정실책에 관한 요인 분석에서 수면부족, 비정상적 컨디션, 뛰기가 힘들어서 판정과정에서 판정 실책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⁴⁵⁾ 결과와 다르지 않다. 즉 공정한 심판 판정의 전제는

43) MK스포츠, “KOVO, 전문위원 및 심판 교육 실시”, 2013. 12. 6.

44) KFA 기획실, “공정한 경기를 위한 노력”,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 정책자료, 2006. 11. 23. 참조.

45) 박해용, 한국 축구 심판들의 판정실책 원인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4권 제3호, 2003, 127-138.

선수와 동일한 수준의 신체와 체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은 의무적으로 건강 및 체력의 단련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자기관리로 경주하고 좋은 컨디션 유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해당 종목의 심판 배정을 담당하는 심판위원회 등은 무리한 심판배정에 있어서 세밀한 조율과 계획으로 심판의 체력적 고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선수에게만 편중되었던 심리기술훈련이 심판에게도 적용하여 적절한 긴장 상태와 안정감을 지닌 상태로 판정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 요인”은 “감독, 코치의 거친 항의가 있을 때”, “동료 심판과의 판정 불일치 및 호흡이 맞지 않을 때”, “학부모 및 관중의 야유와 욕설이 있을 때”, “예선 탈락이 확정된 경기에서 심판 판정을 할 때”, “철저한 경기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등의 요인이 판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심판의 판정실책은 다양한 주변 환경에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중에 코치진, 선수가족, 관중의 야유와 거친 항의는 결국 심판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올바른 판정을 하는데 방해가 됨을 알 수 있다.

관중이 연고가 있는 스포츠 팀을 응원하다 보면 격렬하게 자웅을 겨루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부지불식간에 감정적인 걱정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렇듯 고조된 환경 하에서 일부 선수들은 경기 중 과격한 공격 행동을 유발하여 반칙을 범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격적 행동은 상당 부분 심리적, 정서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이처럼 경기 중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항의와 야유는 관중들의 공격성, 잘못된 축구 문화, 개별적 성격 특성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므로 심판들은 이러한 필연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항의에 대해 담담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의도적으로 심판 판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적인 야유와 공격적 어필은 스포츠정신의 구현과 관전문화 정착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기규칙 요인”의 원자료를 살펴보면 “경기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추측이나 예측으로 판정 하였을 때”, “새로운 경기규칙을 숙지하지 못했을 때” 등이 진술되었다. 심판들은 경기 중 순간적인 판단 및 결정과 같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빠른 판정의 의사결정은 경기규칙의 완벽한 이해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들은 기존 경기규칙 및 새로운 경기규칙에 대한 숙지와 이해가 반드시 선행된 후 경기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주기적이고 정규적인 심판 교육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프로야구에서는 야수에게 배달된 공과 주자의 안착 순서를 바꿔서 판정하여 이로 인해 한 순간에 경기가 뒤집히는 사례가 속출한바가 있다. 이는 객관적으로 심판의 시력과 순간적인 판단력이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빠른 공의 안착을 캐치하지 못한 결과임이 밝혀져 ‘오심도 경기의 이부’라는 심판의 권위지향

적 분위기에 비추어 이러한 명백한 심판의 실책은 비디오 판독 확대와 같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권위 추락과 경기 흐름의 끊김을 우려하여 새로운 심판규정의 도입을 요하는 상황이다. 비디오 판독과 같이 야구 심판 판정에 기계가 도입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처럼 비디오 판독 확대는 심판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⁴⁶⁾ 그러나 야구에 있어서 세계 최고인 미국의 메이저리그(MLB)도 판정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2014)부터 비디오 판독을 확대·시행할 방침임을 밝혔고,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을 제외한 모든 플레이에 한 팀이 경기당 3번의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오심이 확인될 경우에는 횃수로 카운트하지 않기로 한 점은 프로리그를 운영하는 모든 종목 심판 판정에 있어서 시사점을 준다.

심판들은 공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총동원한다.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강속구, 이리저리 휘는 변화구가 3차원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력은 물론이고 공간지각력도 뛰어나야 한다. 구심은 포수 뒤에 서서 서너 시간 동안 100개 이상의 투구를 지켜봐야하기 때문에 집중력은 필수다. 소리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방망이가 공에 스쳤는지, 헛돌았는지는 미세한 소리로 판단한다. 특히 주자가 1루를 밟을 때, 공이 글러브에 박히는 ‘퍽’ 하는 소리에 1루심의 청각과 시각이 복합적으로 반응한다. 하지만 팬들은 심판의 판정이 아닌 선수의 플레이에 갈채를 보낸다. 그라운드 위의 주연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판들은 찰나의 순간, 애매한 상황에 올바른 판정을 내려야 한다. 명백하게 편이 나뉜 스포츠에서 심판은 어떤 판정을 내려도 어느 편에게는 미움이나 불신을 받기 마련이다. 그래서 미국의 야구전문가 레너드 코펫은 자신의 저서 ‘야구란 무엇인가’에서 심판원에 대한 챕터를 ‘자, 이제 ‘악당’을 등장시킬 차례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최근 가장 ‘핫’한 악당인 최 심판은 이렇게 하소연했다. “정말 서글픈 게 뭘 줄 알아?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는 욕을 먹게 돼 있다는 거야. 진 팀한테나 진 팬들한테나. 심판이 잘한 판정은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아. 그런데 오심은 기가 막히게 지적하는 거야. 구장에 있는 슈퍼카메라도 오심 건수를 잡으려고 설치된 느낌이라니까.” 프로야구 구심은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강속구에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5kg이 넘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지만 그 아픔은 상상을 초월한다. 시속 150km의 투구를 직접 맞을 경우 순간 압력은 무려 80t. 아파트 3층에서 떨어뜨린 2kg짜리 벽돌을 정면으로 맞는 정도의 충격이다. 투구나 파울타구가 보호장구에 맞으면 다행이지만 쇠골이나 팔뚝에 맞으면 대부분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다. “공에 맞지 않는 법은 간단해. 타석에 우타자가 섰

46) 뉴시스, “프로야구 비디오판독 확대, 서둘러야 한다”, 2013. 9. 23.

으면 슬그머니 그 뒤에 서면되거든. 그런데 생각해봐. 그러면 공을 정확히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좋은 심판이 될 수 있겠나?”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설사를 달고 살고, 공에 맞아 깨지고, 열혈팬들에게 협박을 받고, 자격 정지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왜 악당을 그만두지 못할까. 미국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심판이었던 빌 클렘이 남긴 일화를 보면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다. 선수가 물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세이프예요, 아웃이예요?” 그러자 클렘이 이렇게 쏘아 붙였다. “내가 판정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⁴⁷⁾

V. 맺음말

이상의 내용과 같이 프로구단이 활성화 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스포츠경기와 좋아하는 종목에 주기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스포츠정신의 구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경기 중에 심판이 명백하게 불공정한 판정을 하였을 때 해당 경기에 대한 악 영향과 지속된 판정시비로 인해 발생하는 해당 종목별 단위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실로 지대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야구경기 중에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는 시속 150km를 넘나들고 이는 축구, 배구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공의 빠르기만큼 현대 스포츠의 추이는 빠른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심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역할수행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점이다.

야구 경기에 임하기 전에 한 심판은 “나는 경기장에 나갈 때마다 기도를 한다. ‘오늘도 무사히’라고.” 택시 기사들이 운전대 옆에 붙여두는 문구입니다. 심판들도 똑같습니다. 오심 없이 경기를 무사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 동료들은 요즘 경기장에서 평소보다 두 배, 세 배 이상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판정 말고도 출장 불가 선수까지 경기에 나오면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심이나 실수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심판도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스포츠도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정정당당한 승부, 완벽한 판정을 향해 땀을 흘리는 심판들의 노력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⁴⁸⁾ 라고 경기에 임하는 심판으로서의 마음 자세를 솔직 담백하게 밝힌바가 있다.

47) 동아일보, ‘고독한 악당’ 스포츠 심판의 세계, 2013. 6. 15.

48) 일간스포츠, 어느 심판의 심경 토로 “요즘은 야구장이 두렵습니다.”, 2013. 07. 01.

한국프로농구는 1997년 출범하여 경기력과 관중의 수 등 질과 양적으로 고르게 성장하여 왔으나 경기 중 심판의 자질부족 등의 공정치 못한 판정의 빈발로 인해 어렵게 쌓아 놓은 농구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심판의 오심의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원한 상황임에 따라 농구에 대한 저변확대가 주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국 농구의 멈추지 않는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심판의 자질행상은 물론 심판을 양성 운영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심판학교의 설립을 통한 우수 심판자원의 확충에 힘쓰고 기존 심판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그리고 영국과 유럽 국가 등과 같이 선수들이 의무적으로 심판코스에 가입하여 심판과정을 이수 권고와 이에 착안하여 KFA가 지도자 강습회나 심판 강습회 또는 세미나에서 역할을 바꾸는 형식의 교육의 실행을 계획한 부분 등도 큰 시사점이 될 것이다.

이처럼 꾸준한 심판양성 및 재교육을 실행한다면 모든 종목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이 더욱 지켜지고 그러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더불어 심판 자질의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오심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과제이다. 명백한 오심에 의해 발생한 승패로 인해 당한 손해에 대하여 심판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오심의 예방을 위한 협회 차원의 보다 능동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 부정 등 사유로 10개 단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19명을 고발한바가 있다.⁴⁹⁾ 이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조직사유화와 단체 운영 부정, 심판 운영 불공정 및 회계관리 부정 사례 등이 지적되었다. 지금처럼 체육단체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심판 판정의 공정성 배가를 위한 정책의 동력이 사라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각 종목별 체육단체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종목별 체육회의 정상화와 투명한 회계운영이야말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첫 단추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49) 머니투데이뉴스, “문체부, 배구협 등 10개 체육단체 수사의뢰”, 2014. 1. 15.

제 2 부
세 셴 3

대학스포츠 지원 방안

강 신 욱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집행위원장

대학스포츠 지원 방안

I 대학스포츠 현주소

<대학스포츠 역할과 위상>

한국 학원·엘리트스포츠의 기반인 대학스포츠 위상 위태

- 대학스포츠는 초·중·고 학원스포츠와 프로·실업스포츠의 가교,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중추
- 전체 대학의 약 80%에 해당하는 160개 대학이 학생선수 육성¹⁾

【대학스포츠의 엘리트스포츠 기여도】

대학스포츠, 한국 엘리트스포츠에 큰 기여

- 국가대표 대학 학생선수 현황
 - '13년 총 45개 종목 국가대표 1,240명 중 대학 학생선수 220명(17.7%)
- '12년 런던 올림픽: 대학 학생선수, 총 메달 57개 중 29개 획득(50.8%)
 - * 22개 종목 국가대표 249명 중 대학 학생선수 181명(72.7%)
- '10년 밴쿠버 올림픽: 대학 학생선수, 총 메달 19개 중 10개 획득(52.6%)
 - * 금메달 6개 모두 획득
- '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학 학생선수, 총 메달 31개 중 13개 획득(41.9%)

- 그러나 현재 대학스포츠는 대학구조조정, 반값등록금 등의 여파로 대학운동부 축소 또는 폐지 등 극심한 존폐 위기
 - ※ '12년 → '13년 대학운동부 42개 감소, 체육특기자 선발 대학 9개 감소

1) 자료 출처: 대한체육회 「선수 및 팀 등록 현황」, 4년제 대학 기준

【대학스포츠 현황】

대학운동부 현황

- '13년 6월 기준 전국 대학운동부²⁾ 934개 운영(4년제 대학)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대학운동부	934	976	962	933

(자료 출처: 대한체육회 「선수 및 팀 등록 현황」)

대학체육특기자 모집 현황

- '13년 6월 기준 전국 체육특기자 88개 대학 3,457명 모집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체육특기자	88개 대학	97개 대학	122개 대학

(자료 출처: 대학교육협의회 「'11~'13학년도 체육 관련 특기자 전형 현황」)

- 특히, 대학평가 내 대학운동부 관련 평가요소 미반영 등의 이유로 각 대학은 연간 수억~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학운동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축소, 대학운동부 폐지

【대학운동부 예산】

대학운동부 연간 수십억 원 지출

대학 구조조정 1순위가 '운동부'(연합뉴스 '13. 12. 12.)

대학운동부 예산

- '09년 기준 56개 대학운동부 예산 평균 4억 6,789만 원, 최대 45억 원

대학운동부 예산	1억 이하	1억~3억	2억~3억	5억~10억	10억 이상
	34.5%	23.64%	10.91%	18.18%	12.73%

(자료 출처: 대학운동부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관동대 박진경)

※ 1인 기준 개인 종목 예산이 단체 종목 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

- 한양대 8개 부 예산 연간 약 50억 원('13년) (SBS '13. 12. 11.)

- 건국대 6개 부 예산 연간 약 30억 원('09년) (동아일보 '09. 03. 26.)

2) 대학운동부: 대학 학생선수로 구성된 대학 내 운동부

【대학운동부 해체 움직임】

한양대, 성균관대 등 대학운동부 폐지 추세 만연

한국 스포츠의 근간 대학스포츠 ‘존폐 위기’(SBS ‘13. 12. 16.)
대학운동부 폐지 움직임… 신음하는 대학스포츠(연합뉴스 ‘13. 12. 10.)

- **한양대 체조부, 육상부, 유도부 해체 위기**
 - 「올림픽 메달리스트 배출한 한양대 체조팀 해체위기」(연합뉴스 ‘13. 12. 06.)
- **성균관대 농구부 해체 위기, 핸드볼부 해체 수순**
 - 「성과주의에 중독된 상아탑… 농구부 정리해고?」(MBN ‘12. 09. 26.)
- **건국대 축구부, 야구부, 농구부 해체 논란**
 - 「건국대, 운동부 ‘사실상 해체’ 파문」(KBS ‘09. 03. 25.)
- **충남대 농구부, 럭비부 정원 폐지**
 - 「대학, 정부평가 올인… 운동부 ‘찬밥신세」(충청투데이 ‘13. 05. 21.)
- **동아대 축구부, 유도부 체육특기자 모집 중단**
 - 「“젊은 꿈이 산산조각 났다” 동아대 축구부의 절규」(동아일보 ‘13. 04. 03.)

II 대학스포츠 지원 노력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대학운동부 지원 노력>

대학운동부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 파악

- 대학운동부 지원을 위한 현장 수요 파악
 - 총장협, 전국대학교체육부(과)장협의회 면담('13. 6.)
“대학평가 내 대학운동부 관련 평가요소 누락으로 대학운동부 예산 축소, 폐지 위기”
- 한국대학평가원 주관 대학기관평가인증제 내 대학운동부 관련 평가요소 추가 타진
 - 총장협, 한국대학평가원과 총 3차 회의('13. 7. ~ 10.)
“대학평가 내 대학운동부 관련 평가요소 추가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필요, 정부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의견 교환
 - 총장협,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학운동부 지원 필요성 건의('13. 09.)
 - 총장협, 교육부에 대학평가 내 대학운동부 관련 평가요소 추가 의견 개진 및 가능성 타진('13. 11.)
- 대학운동부 지원에 대한 현장 요구 파악, 정부 의견 파악 후 집행위원 간 논의를 거쳐 대학운동부 행·재정적 지원 추진 결정

2014년 중점 사업 ‘대학운동부 행·재정적 지원’

- 대학운동부 행정적 지원
 - 정부 주관 대학평가 내 대학운동부 평가요소 추가 추진
- 대학운동부 재정적 지원
 - 총장협 주관 대학운동부 평가를 통한 정부의 재정 지원 추진

Ⅲ 대학스포츠 행·재정적 지원 강화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차원 대학스포츠 행·재정적 지원 강화>

대학평가 내 대학운동부 평가요소 추가

- 대학스포츠 종합 실태 조사, 대학스포츠 발전 방안 등 연구를 통해 대학평가 내 대학운동부 평가요소 추가 정책 지속적 건의

대학평가 내 대학운동부 추가 근거 마련, 분위기 조성

⇒

총장협, 정부(교육부)에 지속적 정책 건의

대학운동부 육성 대학 재정 지원

- 대학운동부 평가 지표 개발, 대학운동부 지원 기준 마련('14년)
 -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대학스포츠 종합 실태 조사 결과 반영
 - ▷ 대학운동부 균등 재정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
 - ▷ 대학운동부 차등 재정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

- 대학운동부(기초종목 및 비인기종목) 대상 재정 지원('14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지원

⇒

총장협 (균등 지원 기준)

⇒

기초·비인기종목 운동부 육성 회원대학

- ▷ 대학운동부 균등 재정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 결과를 반영, 대학운동부 기초종목³⁾ 및 비인기종목⁴⁾ 지원 기준 설정 및 지원

- 총장협 주관으로 대학운동부 양적·질적 자체 평가 실시, 대학운동부 육성 우수 대학 인센티브 지급('15년 ~ / 중장기)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지원

⇒

총장협 자체평가 (차등 지원 지표)

⇒

대학운동부 육성 우수 회원대학

- ▷ 대학운동부 차등 재정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 결과를 반영, 대학운동부 인센티브 지원 기준 설정 및 지원

3) 기초종목: 수영, 육상, 체조

4) 비인기종목: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 중 국내 프로팀이 없는 종목

